

제 918 호
1982. 7. 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편집 : 공 보 관 전 영 호

전 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25-6090

시 보

차 례

○ 훈 령

제 576 호 : 서울특별시위임전절규정중 개정규정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훈 령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훈령제 576 호

서울특별시위임전결

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이 규정은 시장 및 산하 각 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을 “이 규정은 정부공문서 규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으로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위임사항) ①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에 기재하는 사무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 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를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사업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제 1 항중 “내지 별표 23”을 삭제하고 제 5 항중 “시장 또는 각 구청장은”을 “시장으로 한다.

제 7 조 중 “또는 소속 기관장에”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내지 별표 23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82.8.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 입 사 항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공 보 관	1.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 3 조	구 청 장
기획관리실	1. 기관별 총점원내에서 의 과 정원 책정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 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제 3 조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 무원조례 제 2 조 및 제 4 조	각급기관장
내 무 국	1. 6 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인사위원회 운영 (시 험 실시에 한함) 3. 6 급이하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직) 시험 및 기타공무원 시험 4. 공무원증 발급 가. 5 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나. 6 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5. 이, 미용사 면허증 교부 6. 조리사면허증 교부 7. 간호보조원자격증 교 부 8. 간호원, 조산원 면허신 교 접수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 제 7 조 " 제 32 조 공무원증규칙 제 4 조 "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 3 조 식품위생법 제 29 조 의료법 제 58 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1 조, 제 2 조	구 청 장 공무원교육 원 장 " 2 급이상 단위기관장 3 급기관장 구 청 장 " 구 청 장 보 건 소 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9. 안마사자격증 교부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9 조	구 형 장
	10. 관광호텔종사원자격증 교부	관광사업법 제 30 조	•
	11. 증기조종사면허증 교 부	증기관리법 제 19 조	•
	12. 영사기사면허증 교부	영사기사면허령 제 13 조	•
	13. 불교단체 (사찰) 등록	불교재산관리법 제 6 조 동법시행령 제 4 조	• •
	14. 주지 또는 대표임원 취임등록	불교재산관리법 제 9 조 동법시행령 제 5 조	• •
	15. 불교재산 처분허가	불교재산관리법 제 11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	• •
	16. 불교재산목록 신고	불교재산관리법 제 14 조 동법시행령 제 7 조	• •
	17. 불교재산 증감이동 신고	불교재산관리법 제 15 조 동법시행령 제 8 조	• •
	18. 불교재산 예산, 결산 신고	불교재산관리법 제 15 조 동법시행령 제 9 조	• •
	19.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 등록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에 관한 법률 제 3 조 동법시행령 제 1 조	•
	20. 음반판매업자 (변경) 등록	음반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2. 동법시행령 제 7 조	•
	21. 문화재매매업소 허가	문화재보호법 제 56 조의 2. 동법시행령 제 7 조	•
재 무 국	1. 마을금고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1 조의 2	구 형 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2. 시유행정재산과 보존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지방재정법 제 57 조	" 사업소장
	3. 시유 잡종재산의 대 부	지방재정법 제 57 조의 2	구 청 장
	4. 시유 잡종재산의 매 각	"	" 사업소장
	5. 시유재산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 57 조 내지 제 57 조의 5	구 청 장
	6. 시유재산의 등기 (보존, 이전, 분할 및 합병)	지방재정법 제 57 조의 10	"
	7. 공유재산심의회 의 가 격 사정 이 불필요한 감정업무 가. 보상감정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 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 2 조	구 청 장
	나. 불용품매각감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95 조	구 청 장 사업소장
	8. 시유재산의 지적정리 (분할 및 합병)	지방재정법제 57 조	구 청 장
	9.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 제 32 조	"
	10.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법 제 36 조	"
	11. 국유재산의 매 각	국유재산법 제 39 조	"
	12. 국유재산의 등기 (철 기, 등기, 분할 및 합병)	국유재산법 제 11 조	"
	13. 국유재산의 지적정리 (분할 및 합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50 조	구 청 장
	14. 은닉 무주재산 신고 접수	국유재산법 제 53 조	"

[illegible]

국 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산업경제국	1. 가격표시제 실시 가. 단 속 나. 의무부과 (공고이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 조 동법시행령 제 5 조	"
	2.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신청	"	"
	3. 백화점 개설허가	시장법 제 4 조	"
	4. 슈퍼연쇄점 지도감독 및 사업처리 가. 영업실적 보고징구 나. 실태조사 다. 지정, 승인 재정자 금 추천	시장법 제 14 조, 제 18 조	"
	5. 완구제조업체 신고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11 조	
	6. 농수산물 도매시장 매매참가인 및 경매 사 임명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26 조	
	7.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매인 허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 23 조	
	8.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에 대한 업무처리 개선명령 가. 지정도매인의 거래 보증금 수납 나. 지정도매인의 매매 보고 다. 지정도매인소속 중 매인의 거래실적 보고 라. 부정거래의 중지 재경매 또는 재입 찰 명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 62 조 동법시행령 제 34 조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마. 위법거래행위의 단속 9. 내국수출입 상품 재고 증명 10. 공장증설 및 이전 허가 11. 제량기제작 및 수리업허가 등 가. 생산실적 증명 나. 공장이전허가 다. 폐업 신고 라. 공장사업장의 제량기 제작승인 마. 제량기 사등의 이동 신고 12. 표준 주행검사코스의 승인 13. 수입제량기 판매업 등록 14. 제량기 수리업소시설 검정 15. 제량기 정기검사 16. 탱크로리 정기검사 17. 대형저울 정기검사 (10 톤이상) 18. 주유기 수시검사 19. 수출입 화물용 제량기 등록 20. 비법정제량단위로 표시된 제량기의 제작 수입 신고 수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 1 조 공업배치법 제 13 조 제량법 제 13 조 제량법 제 13 조 제량법 제 15 조 제량법 제 18 조 제량법 제 30 조 제량법 제 30 조 제량법 제 30 조 제량법 제 33 조 제량법시행령 제 28 조 제량법시행령 제 57 조의 2	종합기술시험 연구소장 구 권 장 . 구 권 장 종합기술시험 연구소장 . 구 권 장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21. 제량기검정지시서 발급	공업진흥청고시 제 14558 호 (79. 6. 22)	"
	22. 금액표시 상품권 발행등록 및 발행에 관한 업무(2개구이상에 걸쳐 유통되는 것과 상환장소가 2개소 이상 제외)	상품권법 제 1조의 3 동법시행령제 2 조	"
	23. 일반공산품 품질검사 및 조사보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
	24. 중소기업체증명	단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
	25. 수출공산품 생산기업체 신고	상공부고시 제 3014 호	"
	26. 품질표시상품의 관리가. 품질표시 명령	공산품 품질관리법시행령 제 18 조	"
	나. 품질표시명령 위반 상품판매 및 진열 금지	"	"
	다. 품질검사불합격품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	공산품 품질관리법시행령 제 18 조	구 청 장
	라. 품질표시명령 위반 상품판매 및 진열 금지 해제	"	"
	마. 품질표시상품검사 지정상품 조사	"	"
	27. 공장이전확인서 발급	공업배치법시행령 제 30 조	"
	28. 염(합수)제조 허가	염관리법 제 3 조	"
	29. 학용품제조업체의 보고징구 및 보고필증 발급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11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30. 기계공업등록	기계공업진흥법 제 6 조	•
	31. 전자공업등록	전자공업등록법 제 4 조	•
	32.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10 조	•
	33. 에너지관리사채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3 조	•
	34.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9 조	•
	35.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7 조	•
	36. 열사용기자재 사후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3 조	•
	37.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합병 상속 신고	전기공사업법 제 5, 10, 11 조	•
	38. 전기기술자변경이동신고	전기공사업법 제 12 조	•
	39.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사제화인가 및 신고 나. 보안담당자 선배임 다. 사용전 검사 라. 입회검사	전기사업법 제 47 조 • 제 49 조 • 제 51 조 • 제 74 조	• • • •
	40. 전기용품제조업 허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4 조, 제 7 조, 제 8 조	•
	41. 전기용품 단속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14 조, 제 15 조 공업진흥청 고시 제 12556 호 '78. 9. 26)	• •
	42.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4 조	•
	43. 고압가스냉동기기 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조 허가	제 5 조	
	44. 고압가스 냉동수리업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 12 조	"
	45. 주유소허가 및 휴폐지 재개 신고	석유사업법 제 12 조, 제 14 조	"
	46.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대한 보고, 검사 허가취소등	석유사업법 제 13 조, 제 20 조	"
	47. 석유판매소 신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 9 조	"
	48. 농업창고업 인가	농업창고업법 제 5 조	"
	49. 기업목축업 등록	초지법시행령 제 2 조	"
	50. 동물약품제조업 신고	동물약품 취급규칙 제 3 조	"
	51. 동물약품에 대한 약사 감시	약사법 제 64 조	"
	가. 동물약품 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동물약품 취급규칙 제 27 조	
	나. 동물약품 또는 그 원료나 재료의 폐기, 기타 처치명령		
	다. 동물약사감시원 임명		
	52.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 9 조	구 칙 장
	53.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등		
	가. 작업장설치 및 허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 조	"
	나. 작업장설치 준공검사	" 제 5 조	"
	다. 작업장시설 또는 장소변경 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15 조	
	라. 작업장 재개, 휴폐지 상속, 양도, 양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20 조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마. 작업장설치 및 품 목허가증 제교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11 조	
	바. 자체검사원 지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 4 조의 2	
	52. 축산물작업장 또는 착유장 경영자에 대 한 보고명령 등		
	가. 작업장, 착유장, 식 육판매업소에 대한 검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
	나. 작업장 설치허가 취소, 시설사용금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8조	·
	다. 불량축산물의 폐기 압수 수거 또는 폐기명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7조	·
	55. 종제확인증명	축산법시행규칙 제 16 조	·
	56. 사료성분 등록	사료관리법 제 9 조	·
	57. 배합사료 실수요자 증명	상공부고시 제 7724 호	·
	58. 사료판매업 신고	사료관리법 제 10 조	·
	59. 농경지 개간지 조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24 조	·
	60. 농경지개간 허가권 양도허가 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24 조	·
	61. 농경지 개간허가권 상속신고		·
	62. 어선소유신고	어선소유신고요강 제 5 조 내지 제 9 조	·
	63. 소규모 양곡가공공장 허가 (임도정 및 제 분공장)	양곡관리법시행령 제 14 조, 제 18 조	·
	64. 양곡유통단속	양곡관리법 제 17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65. 혼분식 단속	동법시행령 제 16 조 농수산부고시 제 2495 호, 제 2463 호 양곡관리법 제 18 조 동법시행령 제 17 조 농수산부고시 제 2616 호	"
도시계획국	1. 토지형질 변경 2. 보석채취 허가 3. 유흥지 지정통지 및 공고 4.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입안 및 지적고시 5.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지적고시 가. 30미터 미만도로 및 광장과 미관광 장 나. 30미터 이상도로 및 광장의 경미한 변경 다. 폭 12미터 미만의 하천(2개구 이상 연결노선 제외) 라. 하수도(종말처리장 제외) 마. 학교(대학제외) 바. 소매시장 사. 단일종목의 운동장 아. 어린이 공원 자. 30만㎡미만의 쓰레 기 및 오물처리장 차. 일단의 주택지조성	도시계획법 제 4 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 21 조 의 10 도시계획법 제 11 조, 제 13 조 "	" " " 구 청 장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카. 주차장 다. 공용의 청사중 지역단위 청사 파. 하수도시설중 배수지가압장(시스템제통 제외), 기타 방화설비, 사방설치, 저수지, 공동묘지, 공공용지 6. 도시계획용도지구 입안 및 지적고시(아파트지구, 주차장정비지구, 특정가구 정비지구 제외) 7.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시행허가(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30미터 미만도로 및 광장과 미관광장, 30미터 이상도로 및 광장의 경미한 변경) 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행위허가	도시계획법 제 11 조, 제 13 조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5 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9 조	구 청 장
건설관리국	1. 중기등록(신고) 2. 중기검사 3. 중기주거장 및 세차시설 확인	중기관리법 제 3 조 중기관리법 제 12 조 중기관리법 제 31 조	중기관리사업소장 구 청 장

국 별	사 부 명	근 거 법 규	수입기관
	4. 도로보수 및 부속물 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법 제 24 조	
	5.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도로법 제 40 조	
	6.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제 40 조 동법시행령 제 24 조	"
	7. 지하도 상가의도로점용	도로법 제 40 조	구 청 장
	8. 도로상의 지장물정리	도로법 제 48 조	"
	9. 도로점용료 감면신청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 4 조	"
	10. 도로, 구거부지 용도 폐지 신청	서울특별시 재무회제규칙 제 124 조	"
	11. 공공용지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 20 조	"
	12.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차장법 제 7 조, 제 8 조	"
	13.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서울특별시 유료도로통행 료 징수조례 제 3 조	"
	14. 보도굴착 승인	도로법 제 40 조	"
	15. 도로굴착 승인 (지선 포함)	도로법 제 40 조	"
	16. 지하철 시설이용 광 고물 허가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 리법시행규칙 제 2 조	지하철 운영 사업소 장
	17. 1, 2 층 미관지구 및 11 층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건축법 제 4 조	구 청 장
	18.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환지 측량등기	도시재개발법 제 51 조 제 1 항	"
	19.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내 사유지 관리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 시조치법 제 6 조	"
	20. 용역업체소속 건축사 신고 및 퇴사신고	건축법시행령 제 23 조	"
	21. 건축사보 신고 및	건축사법 제 2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신상변동신고		
	22. 건축사 신상변동신고	건축사법 제 8 조	•
	23. 건축사사무소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건축사법 제 23 조, 제 29 조	•
	24. 광고물허가 (2 개 구 이 상 설치하는 광고물)	광고물관리법시행규칙 제 2 조	구 형 장
	25. 10층이하 아파트 건 설사업 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
	26.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변경	주택건설촉진법 제 16 조 동법시행령 제 9 조	•
	27. 연립주택사업 재회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동법시행령 제 9 조	•
	28. 주택자재생산업 면허	주택건설촉진법 제 41 조 동법시행령 제 39 조	•
	29. 시영주택 분양계약 체결	서울특별시 국민주택관리 조례 제 10 조	•
	30. 시영주택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국민주택관리 조례 제 11 조	•
	31. 시영주택 (택지) 보존 등기 및 근거당권설 정과 해지	서울특별시 국민주택관리 조례 제 16 조	•
	32. 시영주택 (택지) 양도 양수 승인	서울특별시 국민주택관리 조례 제 17 조, 제 18 조	•
	33. 시영주택 체비지 경 의변경 승인	•	•
	34. 시영주택 (택지) 소유 권 이전	서울특별시 국민주택관리 조례 제 22 조	•
	35. 시영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5 조	•
환경 녹지국	1. 분뇨처리업 허가	오물청소법 제 12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2. 액상 폐기물 정화조청 소업자 등록	동법시행규칙 제 17 조 오물청소법 제 14 조	"
	3. 액상 폐기물 정화조설 제시공업자 등록	오물청소법 제 14 조	구 청 장
	4. 오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 제 6 조	"
	5.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보전법 제 15 조	"
	6.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	" 제 16 조	"
	7. 개선명령등	" 제 17 조	"
	8. 조업정지등	" 제 18 조	"
	9. 시설의 이전명령	" 제 19 조	"
	10. 배출시설 허가취소	" 제 20 조	"
	11. 위법시설에 대한 폐 쇄조치등	" 제 21 조	"
	12. 배출시설관리인 신고 사항 처리	" 제 23 조	"
	13. 보고 및 검사등	" 제 24 조	"
	14. 입업기술지도등	산림법 제 10 조	"
	15. 라인토지의 출입등	" 제 25 조	"
	16. 조림비용 예치	" 제 41 조	"
	17. 조림경령	" 제 43 조	"
	18. 조림비 반환조치	" 제 44 조	"
	19. 산림용종자, 묘목의 검사 및 판매금지, 소독, 폐기등	" 제 47 조	"
	20. 재제시설의 허가, 취 소, 명령 및 처분	" 제 55 조	"
	21. 조림 또는 복구명령	" 제 65 조	"
	22. 천연보호림등의 보호	" 제 68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관
	관리		
	23. 국유림의 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 협의	산림법 제 72 조	구 칠 장
	24.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 청 또는 차수인의 국유림에 대한 영림 제획의 승인 동의, 신 고 수리	" 제 73 조	"
	25. 국유림의 연대보호명 령 또는 위탁과 산 물의 양여	" 제 74 조	"
	26.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권	" 제 75 조	"
	27. 성림의 인정	" 제 76 조	"
	28. 권리 이전등기에 관한 허가	" 제 77 조	"
	29. 대부 또는 사용허가 의 취소 대부산림 및 대부로등의 반환 조치권	" 제 78 조	"
	30. 국유림 또는 그 산 물의 매각, 교환 및 매수권	" 제 80 조 제 82 조	"
	31. 국유림산물의 년기매 각과 사업제획 및 설비의 변경승인권	산림법 제 83 조	"
	32. 매도증의 발급 및 채취허가와 권리의 양도담보 제공에 관	" 제 84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한 허가권		
	33. 국유임산물의 반출또 는 채취기간 연장 허가	산림법 제 85 조	구 청 장
	34. 매매계약의 해제	" 제 86 조	"
	35. 토석의 매각 및 무 상양여	" 제 87 조	"
	36. 분수림의 설정, 권리 의 양도, 담보제공의 허가 및 분수림 설 정의 취소	" 제 88 조, 제 89 조	"
	37. 병충해의 구제, 예방, 조치 명령	" 제 103 조	"
	38. 사방지 지정 및 해제	사방사업법 제 3 조제 20 조	"
	39. 토석채취허가	" 제 14 조	"
	40. 사방지내에서의 행위 제한	"	"
	41. 그린벨트구역내의 각 종 행위 단속	"	"
	42. 수험면허증 교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 한 법률 제 10 조	"
	43. 임목종자 및 묘목 수출입 추천	상공부공고 제 79-172 호 ('79. 12. 29)	"
	44. 도시공원 시설설치 허가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도시공원법 제 6 조	"
	45. 도시공원 시설관리 허가	" 제 6 조	"
	46. 도시공원점용 및 사용허가	" 제 8 조	"
	47.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관리위탁에 대한 기간 연장	제 11 조	
상 하 수 국	1. 송배수관 확장 및 개량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수탁급수 공사 포함) 가. D= 800 mm 이상 나. D= 700 mm 이하 다. 누수방지에 관한 특수한 개량 및 시설공사 2. 배수관 분기승인 3. 계수변 보수 D= 500 mm 미만 D= 500 mm 이상 4. 가압시설 개량 5. 공업용수 급수공사 6. 공업용수 급수사용로 과징 7. 하천 권리의무양도 양수허가(직할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 제 2 호 제 6 호 내지 제 10 호와 지방준용하천에 대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10 조 제 11 조 서울특별시 공업용수 급수조례 제 8 조 서울특별시 공업용수 급수조례 제 6 조 하천법 제 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	종합건설본부장 구청장 수도관리사업소장 구청장 수도관리사업소장 종합건설본부장 구청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하천법 제 25 조의 허가		
	8. 하천 권리의 무의 승계 상속 신고 (직할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 제 2 호 제 6 호 내지 제 10 호와 지방 준용 하천에 한함)	하천법 제 23 조	구 청 장
	9.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등 허가	하천법 제 23 조	"
	10. 하천점용허가 (직할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 제 2 호 제 6 호 내지 제 10 호와 지방준용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 25 조의 허가)	" 제 25 조	"
	11. 하천점용 및 공작물 사용기간 연장허가	" 제 25 조, 제 26 조	"
	12. 하천공사 등에 따른 준공검사	" 제 31 조	"
	13. 원상회복의 무면제 (지방준용하천)	" 제 35 조	"
	14. 하천연안구역내행위허가	" 제 45 조	"
	15. 하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감독 (허가권 위임된 범위에 한함)	" 제 67 조	"
	16. 공익을 위한 감독처 분 (허가권 위임한 범위에 한함)	" 제 68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상하수국	17. 허가의 효력회복승인 (지방, 준용하천)	하천법 제 70 조	구 청 장
	18. 하천공사착수신고 (지방, 준용하천)	" 제 70 조	"
	1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과년도미결 포함)	" 제 74 조	"
	20. 하천감독처분으로 인 한 손실보상	" 제 75 조	"
	21. 폐천부지등의 교환양 여 (지방, 준용하천)	" 제 76 조, 제 77 조	"
	22.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 4 조	"
	23. 공유수면 원상회복동 조치	" 제 11 조	"
	24. 공유수면사용의 제 한 또는 금지	" 제 12 조	"
	25.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 제 13 조	"
	26. 손실보상	" 제 14 조	"
	27. 명령위반자에 대한 감 독처분	" 제 15 조	"
	28. 조사등에 관한 사항	" 제 16 조	"
	29. 공유수면 점용권리의 무의 양수양도 상속 승계 합병주소(성명) 변경등	시정령 제 5 조 내지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 조 내 지 제 19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상하수국	30. 공유수면매립면허 (직 할하천 이외의 공유 수면에서의 공유수면매 립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 제 2 호내지 5 호에 의한 처분)	공유수면매립법제 4 조	'구 청 장
	31. 유수지 정비 및 유 지관리	서울특별시사무분장 규칙 제 76 조의 2	"
	32. 하천국유화조치시행 (지목변경, 등기, 말 소, 축락 명칭참가)	하천법제 3 조 동법시행령 제 11 조의 2	"
	33. 제방유지관리	하천법제 10 조	"
	34. 하천유지관리	" 제 11 조, 제 12 조	"
	35. 준용하천개수를 위한 조사설계 시공 감독 (단 시장이 지정하 는 주요공사제외)	"	"
	36. 배기통 유지관리	배기통 유지관리 지침	"
교 통 국	1. 가로안내표지판신설 및 유지관리	도로교통법제 3 조	"
	2. 시내버스 기종점 (주 차장) 지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 조, 제 7 조, 제 25 조 동법시행규칙제 13 조	"
	3. 시내버스 후생시설	"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교 통 국	유지관리		
	4.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동법시행규칙제 13 조	구 청 장
	5. 시내버스정류소 이전 분립 (직행좌석버스 제외)	자동차운수사업법제 25 조	·
	6. 창고업허가	창고업법제 3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
	7. 임차약관인가 및 변경명령	창고업법제 7 조, 제 8 조	·
	8. 창고업변경 (위치, 구조, 설비변경, 보관하는 물품종류 변경) 허가	창고업법제 12 조 동법시행규칙제 11 조	·
	9. 창고업외 변경명령 (구조, 설비품목)	· 제 13 조	·
	10. 창고업 (상호, 임원, 정관) 변경신고	· 제 14 조 동법시행규칙제 12 조	·
	11. 창고업 사업정지 폐업신고	창고업법제 15 조 동법시행규칙제 14 조	·
	12. 창고업 양도, 양수 인가	창고업법제 18 조 동법시행규칙제 16 조	·
	13.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창고업법제 20 조	·
	14. 보고 및 검사 (지도감독)	· 제 21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교 통 국	15. 창고업의 개시신고	창고업법시행규칙제 6조	구 청 장
	16. 자동차운송사업계획중 대폐차주사무소 변경 신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 3조 동법시행규칙제 22조	"
	17. 개인택시 한시택시 화물 용달사업 양도 양수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 28조	"
	18. 자동차운송사업부대시 설(화물취급소)인가	" 제 13조 동법시행규칙제 21조	"
	19.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면허	자동차운수사업법제 49조	"
	20. 자가용버스 유상운송 허가	" 시행규칙 제 57조	"
	21. 무허가정비업소 단속 및 정비명령등	도로운송차량법제 44조의 2, 제 43조의 7, 제 84조	"
	22. 정비주임선해임신고	도로운송차량법제 44조의 11	자동차관리 사업소장
	23. 정비관리자선해임신고	도로운송차량법제 43조의 5	"
	24. 자동차검사장지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 113조	"
	25. 차량보안기준완화승인 (초과중량에 한함)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 51조	"
	26. 화물터미널 지도감독	자동차정류장법제 14조	구 청 장

국 별	사 부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교 통 국	27. 자동차신규등록	도로운송차량법제 7 조	자동차관리 사 업 소 장
	28. 자동차번호지정	" 제 9 조	"
	29. 자동차봉인	" 제 10 조	"
	30. 자동차변경등록	" 제 11 조	"
	31. 자동차이전등록	" 제 12 조	"
	32. 자동차이관등록	" 제 13 조	"
	33. 자동차말소등록	" 제 14 조	"
	34. 자동차등록검인	" 제 15 조	구 청 장
	35.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발급	" 제 20 조	자동차관리 사 업 소 장
	36.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 대행자지도감독	" 제 23 조	구 청 장
	37. 자동차임시운행증	" 제 33 조	자동차관리 사 업 소 장
	38. 신규검사증교부	" 제 48 조	"
	39. 자동차제속검사(연기 및 타관할)	" 제 49 조 제 52 조	"
	40. 자동차임시검사	도로운송차량법제 51 조	"
	41. 기관제사용증명원	" 제 54 조	"
	42. 자동차검사증교부	" 제 58 조	"
	43.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자동차저당법제 5 조	"
	44. 특수유흥음식점등록	관광사업법제 21 조	구 청 장
	45. 관광사진업등록	"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교 통 국	46. 외국인과의 거래액 증명	조세감면규제법제 8 조	구 청 장
민 방 위 국	1. 직 장 민방위편성지정 2. 직 장 민방위대 개편 및 해 체 명령 3. 연합직 장 민방위대 지정 4. 직 장 민방위대 교육 위 입 지 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8 조 " " " 내무부지침 (77.7.25)	" " " "

(별표 2)

본 청 위 임 전 결 구 분

1. 각 실 과 공 통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합조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각실과 공 통	1. 복무	1. 출장 방침							여 산 예 산 담당관 인사과장
		가. 관 외							
		(1) 3 급이 상						○	
		(2) 4 급						○	
		(3) 5 급이 하				○			
		나. 관 내							
		(1) 3 급이 상						○	
		(2) 4 급						○	
		(3) 5 급이 하			○				
		다. 국외출장 방침							여 산
		(1) 4 급이 상						○	담당관
		(2) 5 급이 하						○	인사과장
		2. 연가, 휴가, 조퇴, 외출의							기획관
		허가 및 특근명령							리실장
		가. 연가 및 휴가							인사과장
		(1) 3 급이 상						○	국무국장
		(2) 4 급						○	
		(3) 5 급						○	
		(4) 6 급이 하						○	
		나. 조퇴, 외출, 허가 및 특근							
		명령							

제 목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행 조 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1) 3급이상 (2) 4급 (3) 5급이하 다.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		
	2. 직급 면직및 직위해제	1. 소속직원의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가. 4, 5급 공무원 나. 6급이하					○		
	3. 계획	1. 기본운영계획 및 시행계획 의 작성변경 2. 심사분석자료 제출				○			
	4. 예산	1. 예비비 기타 포괄사업비 집행결정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3.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4. 예산배정(재배정) 요구 5. 예산의 이용 유용 요구 6.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신청						○	예 산 담당관
	5. 기채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인출 3. 원리금상환					○		기 회 관리실장 예 산 담당관
	6. 공사	1.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예 산 담당관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세 권 자					행조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2. 공사발주 가. 1건 당도급비 2억원이상 나. 1건 당도급비 3,000 만원 이상 다. 1건 당도급비 3,000 만원 미만 3.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4. 시공 감독원 지정 5. 설계범위내의 인부고용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배정 7. 공사용 자재의 공차사용 및 공배승인 8. 도급공사의 중지해제 결정 및 준공공사가간의 전기결정 9. 도급공사의 착공 및 기선부 분 준공검사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11. 준공검사항의 지정 12. 공사항자 보수명령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 소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14. 설계 변경의유서 15. 공사현 장보고서 16. 공사의 설계변경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가. 기본설계변경 나. 기본설계이외의 변경					○	
	7. 물건 제조구매 및임대차	1. 물건의 매매와 노력의 공급 (농역) 및 운반과 임대차 가. 1건당 1,000 만원 이상 나. " 500 만원 이상 다. " 500 만원 미만 2. 판급(조달) 물자구매					○	예 산 담당관 회계과장
	8. 재산	1.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등의 기본방침 결정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등의 가격결정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등의 계약 체결 (기정계약의 계속임대차) 4. 재산의 취득·처분 교환, 보상 대부등의 감정 및 가 격 사정 의뢰					○	예 산 담당관 회계과장 판재과장 예 산 담당관 회계과장 판재과장
	9.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3. 분담금 감액 결정				○	○	예 산 담당관 회계과장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4. 보조금 및 교부금의 지급 결정 가. 3,000 만원 이상 나. 3,000 만원 미만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10. 보상	1. 보상업무의 종합계획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2,000 만원 이상 나. 2,000 만원 미만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4. 보상금 적심결정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6. 보상금 재결신청 가. 1건당 5,000 만원 이상 나. 1건당 5,000 만원 미만 7. 보상금 사건확인 8. 보상금 지급						
	11. 수수료 및사용료	1. 제수수료 지출 가. 1건당 100 만원 이상 나. 1건당 100 만원 미만 2. 수입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12. 봉급 여비및 기타	1. 봉급, 여비 및 기타 외무직 경비의 집행 품의 2. 공공요금 제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				
	13. 상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2. 특별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	○		
	14. 소원및 소송	1. 소 원 가. 진달 나. 재결 2. 소 송 가. 방침수립 나. 응 소 다. 제소 상소 및 포기 라. 소송대리인 선임의뢰 마. 정송관계 자료 제출 바. 청구인락 또는 소취하 사. 답변서 준비서면등 작성 제출				○	○		법 무 담당관
	15. 법규 및 고시 공고	1.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건의 정비, 해석 2. 자치법규의 재정, 개정, 폐지 방침 3.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 및 질의응답					○	○	법 무 담당관

제 일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4. 고시, 공고, 광고문의 결정							
	16. 자료 제출	1. 관계자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 른 자료의 제출 (청내, 광복 문서) 3. 기타 경미한 자료 제출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5. 정기보고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7. 하부기관 및 다과로부터 보고나 공신을 요하는 문서 (1회보고 승인) 8. 산하 사업소의 3마한 가 의 자료제출 및 조사지시							
	17. 각종위 원위원회 위해촉및 운영	1. 위원장의 가. 시장 또는 외부인사 나. 부시장 다. 국장 2. 문 연							
	18. 각종 협의 (국·과간)	1. 전결권자가 가. 시 장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나. 부시장 다. 국 장 라. 과 장				○			
	19. 회의	1. 회의소집 가. 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나. 기타 직원회의				○			행정 과장
	20. 민원 서류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2. 각국실에 관련된 청원, 진정 서 및 건의서 3. 중요 청원진정서 및 건의서 4. 심미한 청원진정서 및 건의서 5.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6. 부신을 요하는 청원, 진정서 또는 건의서 전달 7. 부신을 요하지 않는 청원 진정서 또는 건의서 전달 8.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한 중간 처리상황통보, 기각, 완결 통지 및 처리상황 경열 9.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1. 기타 일반	1.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처리 2. 국간의 사업협조 3. 소관업무에 관한 구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소속기관의 사구분장 5. 사무 인제 인수 가. 부시장 나. 국 장 다. 실, 과장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7. 지방전문직원의 임면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기의 소인 검열 10. 물품의 반납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12. 소속금품 출납 명단 13. 시외전화 사용허가 14. 계약 심사의뢰 15. 각종 간행물의 배부 16. 차량 배차 신청 17. 각종 통계 및 성예보고 (중앙부처, 타기관) 18. 소속직원 교육				○ ○ ○			

2. 공보관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공보계	1. 공보 행정	1. 공보행정종합계획 2. 월중 홍보지침시달						○	
	2. 공연 행정	1. 공연장 지도 2. 광고영화제작신고 검열 3. 대한뉴스 및 문화영화 배포		○		○	○		
	3. 산업 시찰	1. 산업시찰 종합계획					○		
	4. 안보 강연및 영사활동	1. 상설순회 홍보반 운영 2. 영화교실 운영계획				○	○		
	5. 시보 발간	1. 시보발간				○			
	6. 사회 단체	1. 사회단체등록 및 지도 2. 사회단체 등록사항 변경				○	○		
	7. 반공 단체	1. 반공단체지원 및 제몽				○			
	8. 전시 홍보	1. 전시홍보 종합계획 및 집행 에 관한 사항					○		
보도계	1. 보도 활동	1. 보도 및 대언론관계 2. 주간보도분석 3. 시정홍보영화제작방침 결정 4. 신문구독 계획 5. 시정홍보관 전시운영 6. 시정홍보 편집발간				○	○	○	

지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사 장	시 장
		7. 방송 모니터실 운영 8. 기자실 운영 9. 사진실 운영 10. 유선방송업체 운영지도		○				
				○		○		
						○		

175-40

제 918호 시

보

1932.7.7.

3. 기획관리실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담당관	실장	부시장	시장	
가. 기획담당관									
기 획 조정제	1. 기본 운영제 획편성	1. 기본운영계획 지침 및 최 종안 편성 2. 자료수집 및 배부 3. 중요사업 종합조정 및 사 업 우선 순위 결정 4. 최종안 작성 5. 최종안 발간			○			○	에 산 담당관
	2. 기본 운영제 획수정	1. 수정요구사항 검토조정 및 심의 2. 수정요구사항 승인요청 (국무총리) 3. 수정결과 통지			○		○		
	3. 시정 종합시책	1. 시책자료 수집 2. 시책보고 발간				○	○		
심 사 분석제	1. 기본 운영계획 심사분석	1. 심사분석 지침 시달 2. 심사분석 자료 수집 3. 심사분석평가 및 보고 4. 결과 시정 지시 5. 보고서 발간 6. 중요사업 주간 진도 확인			○		○	○	
	2. 계획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2.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	○		

계 별	단위업무	세 후 사 항	결 제 권 자						형조처
			담 당 자	제 장	담당 관	실 장	부 시 장	시 장	
	3. 지시 사항총 괄	1.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 사항 총괄				○			
기 회 관리제	1. 시사 편찬및 시사 편 찬위원 회운영	1. 자료수집 2. 위원회 소집심의 3. 편찬 발간			○		○	○	
	2. 시정 현황총 합기록	1. 시정개요 자료 2. 시정개요 발간			○		○		
	3. 시장 지시사항	1. 시장지시 사항 총괄				○			
	4. 기타	1. 주요업무 일일보고				○			
	나. 정책조정담당관								
정 책 조정제	1. 정책 조정	1. 시정업무에 대한 심의안건 조정 2. 정책심의안조정결정				○			
정 책 자료제	1. 정책 자료수 집분석	1. 정책자료수집 및 분석보고				○			
다. 예산담당관									
예 산 총괄표	1. 편성및 승인요구	1. 예산안작성 및 보고 2. 예산사정 편성 및 고시				○			

175-42

제 918 호 시

보

1982.7.7.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담당 관	실 장	부 시 장	시 장	
		(추경, 수정포함) 3. 예산승인신청 4. 전시에 산편성 및 조정				○ ○			
	2. 예산 운영	1. 예산배정계획 작성 2. 비용 승인신청 3. 세출예산 유용결정 4. 예비비 집행승인 신청 5. 포괄사업비 집행승인 신청 6. 유용 예비비 기타 집행통지 7. 사고이월 결정 8. 세입 세출 예산분석 9. 예산배정 통지서 사본송부				○ ○ ○ ○ ○ ○ ○ ○		○ ○	
각 제 공 동	1. 예산 합의	1. 3,000 만원 초과공사, 제조 집행 합의 2. 3,000 만원 이하공사, 제조 집행 합의 3. 1,000 만원 초과물품구입 합의 4. 1,000 만원 이하 5. 500 만원 초과 기타사항합의 6. 500 만원 이하 7. 재무회계 규칙 제 27 조 제 2 항 의 사항 8. 예비비 및 포괄사업비 집행 합의	○			○ ○ ○ ○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랑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담당관	실장	부시장	
	2. 예산 배정	1. 정기적 경상비(분기)배정 2. 2,000만원 초과외 공사 제조 예산 배정 3.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제조 예산 배정 4. 500만원 초과외 물품대입 비 배정 5. 500만원 이하의 물품대입 비 배정 6. 500만원 초과외 기타경비 배정 7. 500만원 이하의 기타경비 배정 8. 재무회계 규칙제 5조 3호의 제경비 9. 전출금 전출결정 및 배정 10. 예산집행 합의문에 대한 배정 11. 방침결재분 배정			○	○		
라. 투자관리담당관								
경 영 분석제	1. 공기업 업무	1. 공기업경영 기본계획승인 2. 공기업사업 요금조정 협의 3. 공기업사업원가분석				○		

175-44

제 918 호

시

보

1982.7.7.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계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담당관	실장	부시장	시장	
투 자 심사제	1. 외자 및 차관	1. 외자구매의뢰 2. 통관서류작성 3. 지불보증금 및 상환금지출 4. 공무원 해외여행 의화사용 5. 차관계획 및 계약 6. 차관원리금 상환			○ ○ ○ ○ ○ ○			○	
	2. 외채 발행	1. 외채발행						○	
마. 시정개발담당관									
조 직 관리제	1. 직제 에 관한 사항	1. 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	
	2. 정원	1. 정원 (각급직원의 증감) 조 정 방침 2. 법규범위내의 정원조정 가. 일반직 나. 고용원 및 잡급직 3. 기관내의 파별정원 4. 인력관리 실태조사					○ ○ ○ ○	○	
시 정 연구제	1. 시정 연구단운영	1. 비전임직원 회의개최				○			
	2. 과학기 술 정보 센터활용	1. 필수 자료의 수집의뢰 2. 수집된 자료의 관리			○ ○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제 장	담당관	신 장	부시장	시 장	
	3. 해외교포시정자문위원회 운영	1. 자문위원과의 연락 및 자료 교환			○				
	4. 각종자료발간	1. 세계도시뉴스 발간 2. 시정연구자료 발간 3. 각종 도시자료의 구입 및 관리			○	○			
	5. 용역연구	1. 각종 용역사업 검토				○			
	6. PACOM 회의	1. PACOM 회비 납부 2. PACOM 과의 연락			○	○			
제 도 개선제	1. 제도 개선	1. 행정 및 사무관리개선에 관한 지도확인 2. 행정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			
	2. 제안제도및직무발명	1. 제안 모집 2.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 의견조회 3. 제안에비심사 4. 제안심사결과 통지 5. 제안의 실시 및 평가 6. 제안 및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결정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지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담 당 관	실 장	부 시 장	시 장	
바. 법무담당관									
법제제	1. 자치 법규	1. 조례안의 총리승인 요청 가. 중요내용의 정비안 나. 관계법령정비에 따른 정비안 다. 자구수정등 경미한 내용 의 정비안 2. 조례 공포 3. 규칙안의 총리사전보고 및 공포 4. 훈령 발령						○ ○ ○ ○	
	2. 편찬 간행	1. 자치법규집 편찬 간행 2. 예규집 편찬 간행 3. 질의응답집 편찬 간행 4. 각종 법무관계 자료편찬간행				○ ○ ○ ○			
	3. 법무 심사	1. 고시 공고안심사 2. 예규 및 중요문서 심사 3.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	○ ○				
송무제	1. 소송	1. 소송대리인 및 위임장발부 2. 쟁송관계 지휘 통제 3. 쟁송시안 이첩 (주관과지정)			○ ○	○			
	2. 소송 비용지 출	1. 소송비용지출 1건당 50 만 원이상 2. 소송비용지출 1건당 50 만 원미만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절 제 권 자						협조기
			담당자	제장	담당관	실장	부시장	시장	
	3. 배상금지출	1. 배상금지출 1건당 100만원 이상 2. 배상금지출 1건당 100만원 미만				○			
	4. 공탁금지리	1. 공탁금 1건당 100만원이상 2. 공탁금 1건당 100만원미만				○			
	5. 소송수행자표창	1. 포상금지출 2. 표창의뢰				○		○	
	6. 법률고문및소원심의회운영	1. 법률고문및심의회위원 위해촉 2. 회의자료 수집 작성				○		○	
사. 통계전산담당관									
통계계	1. 업무통계	1. 통계연보 발간 2. 각종 통계 간행물발간 3. 각종 통계자료수집 및 의뢰				○			
	2. 통계자료심의조정	1. 통계자료 심의조정 2. 통계기준설정				○			
	3. 조사통계	1. 지정통계조사의 실시계획 및 조정 2. 기타 조사통계의 계획 및 조정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제 장	담 당 관	실 장	부 시 장	시 장	
		3. 위임통계조사 4. 통계의 공표 5. 각종 조사통계의 집계와 편찬 6. 조사원의 교육훈련 7. 조사통계 연구				○ ○ ○ ○ ○			
전 산 1, 2계	1. 전산화 종합계획 및 시행	1. 행정 전산화 종합계획 2. 전산처리 및 부수된 일반 사항			○			○	
	2. 전산 도입	1. 전산조직 도입계획 (종합계획에 따른)				○			
	3. 전산요 원선발및 교육	1. 전산요원 교육 2. 전산요원선발			○ ○				

4. 감사관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현조처	
			담당 자	재 장	담당 관	국 장	부시 장		시 장
가. 감사담당관									
각 계 공 통	1. 공무원 징계요구	1. 징계요구 (단,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은 6 급이하라도 시 장에게 보고한다.) 가. 4 급이상 나. 5 급 다. 6 급이하							
	2. 공무원 훈계	1. 3 급이상 2. 4 급 3. 5 급 4. 6 급이하							
	3. 감사실 시정결과 보고	1. 정보 진정, 헌원등에 의한 직원 비위조사 2. 감사결과 지적사항조치 결 과보고 3. 검찰 및 경찰통보사항처리							
	4. 청원진 정서처리	1. 대통령 비서실 이첩분 가. 보고를 요하는 사항 (단, 중요사항은 시장) 나. 자체처리 종결분 다. 각과 이첩처리 지시분 2. 정부 및 감사원 이첩분 가. 보고를 요하는것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제장	담당관	국장	부시장	
		나. 자체처리종결분 다. 작과 이첩처리지시분			○			
감 사	1. 감사	1. 종합감사계획					○	
1 계	계획수립	2.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3. 종합감사의, 일정변경			○			
	2. 감사통계및보고	1. 비위공무원 통제보고 2. 수시 비위공무원 발생보고 3. 비위공무원조사 및 조회 4. 소송 및 소청에 대한 검토 5.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가. 감사원질문서 처리 나. 판정, 제도개선 비위통보 (5 급이상) 중요시정사항 다. 비위통보 (6 급이하) 경미한 시정사항주의등 기타 처분사항 라. 집행전말보고 (단, 중요한 사항은 부시장에게 보고)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담당 관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감사2 3 계	1. 특명 조사및 시만여 론청취	1. 특명사항 및 여론조사보고 2. 개별사항 수사보고							
감 사 4 계	1. 사정 업무	1.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보고 2. 사정업무추진실적보고 3. 비위자통제보고							
	2. 주요 사업추 진확인	1. 주요사업추진확인보고							
감 사 5 계	1. 환경 순찰	1. 환경순찰운영사항 확인점검							
나. 사회지도담당관									
사회정 화1 계	1. 사회 정화운 동	1. 사회정화운동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사회정화운동 종합평가 3. 사회정화운동 지도계획 4. 사회정화운동 홍보 5. 사회정화운동지도							
	2. 지역 정화추	1. 시험의회 2. 구협의회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남 당 관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진협의 회(위 원회) 지원	3. 등·봉위원회 4. 시범위원회			○	○			
	3. 수범 사례발 굴확산	1. 수범사례발굴 2. 수범사례발표회 개최 3. 수범사례집 발간				○ ○	○		
	4. 청탁 배격문 동	1. 청탁사항보고 2. 월별 추진상황 보고				○		○	
	5. 기타	1. 일일 동향 보고 2. 시단위 행사 계획수립시행 3. 구단위 행사 계획수립시행				○ ○	○		
사회정 화 2 계	1. 실천 과제개 발	1. 정화실천과제개발 및 계획 수립실천					○		
	2. 길서 확립운 동	1. 거리질서확립 운동추진 및 지도 2. 상거래질서확립 운동추진 및 지도 3. 분수지키기 운동추진 및 지도				○ ○ ○			

제 목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담당관	국장	부시장	시장	
		4. 건전생활화립 운동추진 및 지도				○			
	3. 순화 귀가관 리	1. 순화귀가자 사후관리 2. 순화귀가자 현황보고			○	○			
사회정 화3계	1. (시 산하) 직장및 단체의 정화운동추진 및 지도	1. 각급 정화추진 위원회의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2. 각급 정화추진 위원회의 지도 감독 3. 시범기관 지도육성지침 4. 각급 위원회 추진실적보고					○		
	2. 사회 정화이 념교육	1. 교육시행계획수립 2. 교재편찬 3. 실적파악 및 기록유지 4. 대상자 선정					○		
	3. 행락 질서확 립	1. 행락질서화립 운동추진 및 지도 2. 실적파악 및 기록보존 3. 종합분석평가					○		

5. 내 부 국								
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 조 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가. 총 무 과								
사무제	1. 일반 서 무	1. 청중단속 및 청사내외 경비 2. 당직근무명령 가. 2급이상 나. 3급이하 3. 회의실 및 상황실 관리 4. 정례조례 및 확대간부회의 운영			○			비서실
	2. 인사	1. 본청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용, 교육 및 상벌			○			
	3. 직원 후 생	1. 체육회 운영 2. 후생시설 개선 및 가격통제 3. 후생시설 검사 4. 직원채워향상				○		
	4. 보안 관 리	1. 보안감사계획 및 실시 2. 보안업무 정기보고 3. 보안업무 조정통제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 5. 고용원 비밀취급 인가				○		
	5. 운동 장관리	1. 시립운동장 사용허가 (운동경기 제외)				○		
	6. 향토 예비군	1. 교육 및 무기관리 2. 장비지급 관리 3. 전출입 관리	○			○		

버서실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행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4. 각종 현황보고				()			
	7. 민방위 협의회 운 영	1. 회의소집 2. 의제 및 회의록 3. 정례적 의결사항 처리				()	()		
	8. 본청방 호태세	1. 본청 민방위훈련 2. 지시각서 확인 및 취약지점 점검 3. 전시행동 및 이동계획				()	()		
	9. 기 타	1. 공무원연금매점 운영			()				
차량제	1. 차 량 관 리	1. 일일 배차명령 2. 유류지급 3. 차량등록 수속 4. 차량검사 수속 5. 본청 국·과·실용 차량배정 6. 차량불용결정		()	()	()			
	2. 차량교 체승인	1. 차량교체승인 2. 차량교환승인				()	()		
관리제	1. 광열의 처 리	1. 광열시설물 점검 2. 교체명령 (소모기자재)							
	2. 청 사 관 리	1. 과·실의 사무실 배정 2. 시청앞 광장사용 허가							
통신제	1. 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1. 각종 통신망 운영 및 유지 관리 2. 청내 방송실 운영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3. T.T실 및 테렉스실 운영 4. 읍어자재 관리 5. 비상통신망 운영 6. 과·실의 전화배정		○					
					○				
				○					
나. 의 전과									
의 전 1 제 1 행 사	1. 의 전	1. 주요행사 기본계획						○	
	2. 표창	1. 시장명예의 상장수여				○			
	3. 승인	1. 당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의 전 2 제 2 행 사	1. 의 전	1. 외국인사 초청 2. 명예시민증 발급						○ ○	
	2. 표창	1. 외국인사에 대한 표창 상장 및 감사장 수여						○	
다. 인사과									
보 임 1.2제	1. 공무	1. 신규임용, 특별임용, 전직, 승진 강임 가. 5급이상 나. 6급이하, 기능직						○ ○	
	원 의 임 용 (일반 직,기능 직)	2. 전출입·동의 가. 전입동의 나. 전출동의 (1) 5급이상 (6) 6급이하, 기능직 3. 시보해제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가. 5 급이상 나. 6 급이하, 기능직 4. 국비, 지방비간 특별임용 가. 5 급이상 나. 6 급이하, 기능직 5. 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 연퇴직, 정년퇴직, 사망) 전보 (겸임 파견포함) 휴직, 복직, 직위해제, 징계 (파견, 해임, 정직, 감봉, 전책) 가. 4 급이상 나. 5 급 다. 6 급이하, 기능직 6. 1 - 5 호중 지방참사함 7. 호봉승급 가. 5 급이상 나. 6 급이하				○			
	2. 신규공 채자기관 배 정	1. 6 급이하, 일반직 2. 기능직							
	3. 승진후 보자서열 명부작성 결과보고	1. 5, 6 급 공무원 2. 7 급이하, 기능직							
	4. 비밀취 급인가	1. 5 급이상 2. 6 급이하, 기능직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5. 재산등록	1. 공무원 재산등록상황 결과보고					○		
	6. 인사평점	1. 4 급이상 공무원 인사평점 결과 보고						○	
	7. 기 타	1. 공무원증 발급 2. 재직, 경력, 퇴직증명 발급경유 3. 수습행정관 수습배치 4. 신원조회 5. 전력조회 6. 인사기록 이송 7. 인사기록카드작성 정정 8. 공무외 겸직허가 가. 5 급이상 나. 6 급이하, 기능직	○		○	○		○	
보 임 1 제	1. 별정직 인 사	1. 4 급상당이상의 인사 2. 5 급상당 인사 3. 6 급상당이하의 인사						○	
	2. 고용직 인 사	1. 고용직 인사관리			○				
보 임 2 제	1. 연금사 무	1. 공무원연금카드 송부 및 의뢰 2. 기여금 불입내역서 제출 3. 연금부담금 납부		○					
	2. 의료보 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 상실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나. 피부양자 신규·상실 다. 기타 자격관리 2. 보험료 징수 가. 보험료납입 총괄 나. 보험료부담금 납부 3. 보험급여 가. 분만비, 요양비, 장제비신청 나. 본인부담금 및 환급금수불		○ ○ ○ ○ ○					
교과제	1. 상 훈	1. 정부 우수공무원 추천 2.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3. 외부기관 표창추천 및 동의 4. 시장표창 가. 연간표창 제척 나. 4 급이상 표창 다. 5 급이하 표창							
	2. 복 무	1. 연간 복무지침 수립 2. 복무 단속제척 3. 복무위반자 조치 가. 징제요구 (1) 4 급이상 (2) 5 급이하 나. 훈제, 경고처분 4. 복무관제제척요처리 5. 하제 연가제척							

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가. 4 급 이상 나. 5 급 이하				☐	☐		
	3. 근무성 적 평정	1. 평정 결과보고 가. 5, 6 급 나. 7 급 이하, 기능직 2. 7 급 이하 분포인원 사전배정				☐	☐		
	4. 공 무 출 장	1. 해외출장(파견) 명령 2. 관외 출장명령 가. 4 급 이상 나. 5 급 이하			☐	☐			
	5. 피교육 자 선발	1. 국외훈련자 추천 가. 4 급 이상 나. 5 급 다. 6 급 이하, 기능직 2. 자체 또는 국내 위탁교육 훈 련자 선정 가. 3 급 이상 나. 4 급 다. 5 급 라. 6 급 이하, 기능직 3. 피교육자 수요조사			☐	☐	☐	☐	
	6. 교 충 심 사	1.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나. 심상문제에 관한 사항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7. 기 타	1. 직장훈련 2. 직원 후생사업 3. 행사요원 차출 (임용권외 기동근무명령) 가. 4 급이상 나. 5 급이하, 기능직				()	()		
라. 행정과									
행정제	1. 행 정 구 역	1. 행정구역 및 사무소위치의 조정 2. 행정구역 및 사무소위치의 실태조사 3. 사무소위치의 변경 및 설정 4. 사무소 위치변경 고시 5. 동사무소위치 고시							
	2. 구 동 인 사	1. 구·동공무원의 인사 합의							
	3. 구 행정 실적심사	1. 방침결정 2. 기정방침에 의한 심사요목 책정 3. 심사실시 확인 4. 결과보고 및 시정지시							
	4. 예 산	1. 구청집행분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2. 사업비예산의 배정계획 합의							
	5. 구 운 영 제 회	1. 구운영계획의 수합조정							

175-62

제 918 호

시

보

1982.7.7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비 장		시 장
		2. 구중요사업의 진도확인 및 심사분석				○			
	6. 구·동 청사관리	1. 구·동청사 정비계획 및 시 행 2. 동청사 및 대지임차료 사정 요구 3. 임시동청사 이전승인			○	○			
	7. 구청장 사무 인 계 인수	1. 구청장 사무 인계인수				○			
지도 제	1. 통·반 운 영	1. 통·반조직 및 개편지침 2. 통계보고				○		○	
	2. 반상회 운 영	1. 기본운영지침 2. 반의세 선정 및 결과속보 3. 건의사항 처리				○		○	
	3. 표 창	1. 모범 통·반장, 시민표창					○		
	4. 기부금 품	1. 기부금품 모집허가 및 허가사 항 변경 2. 기부금품 모집허가사항 전달 3. 기부금모집액 할당 및 모집 지도감독			○	○	○		
	5. 시민의 대학운영	1. 연간 종합실시계획방침 2. 시간표 및 강사편성 3. 기별 실시계획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3. 운행 질서위 반차량 행정처 분	1.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위반단속 적발시 보유차량 감치처분 2.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위반단속 적발시 보유차량 운행정지 처분 3. 운수사업자 경고처분 4. 사업용 자동차 도도운송 보안규칙 위반시 당해 차량 정비 명령 5. 자가용차량 공동사용시 차 량운행 정지처분 6. 자가용 영업행위시 차량운 행 정지처분 7. 자동차 매연 및 일산화탄 소 기준초과 발생 차량단속 적발정비 명령 및 운행정지 처분 8. 자동차 매연 및 일산화탄 소 기준초과 발생차량 단속 적발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 처분 및 고발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원조처
			담당자	제장	파장	국장	부시장	시장	
	5. 평화통일정책재문회의대행업무	1. 일반지원업무				○			
	마. 시당과								
문 서 관 리 제	1. 문서통제	1. 문서통제의 방침결정 2. 문서처리 지연자 조치 3. 민원서류처리 지연통보 4. 문서통제 및 문서분류	○		○	○			
	2. 관 인 관 리	1. 관인변경 2. 관인 사전 날인신청	○			○			
	3. 보 존 문 서	1. 보존문서 관리 2. 문서열람 대출 3. 각종인쇄 및 유인물 통제 4. 공고번호 부여	○ ○ ○			○			
민 원 1 제	민원처리	1. 국제결혼 신고 2. 재직, 퇴직 경력 증명 3. 공연신고 4. 공연자 등록 5.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6.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7. 관람료인가 (상설극장) 8. 수출입업 허가	○ ○ ○ ○ ○ ○ ○ ○		○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행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9. 수출입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 10. 수출입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11. 건설기술자 신상변동 신고 12. 건설업 면허 기재사항 변경 신고 13. 건설업 면허 (단종) 면허증 면허수첩 재교부 14.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 15. 중기정비사 신상 변동신고 16. 특별관세 원산지 증명 17. 침사, 구사 면허증 재교부 18. 증요업 허가		○					
민 원 2 제	1. 민 원 처 리	1.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증명 발 급 (전기, 화공, 섬유, 기계, 의약, 목재)							
바. 새마을지도과									
새마을 지도제	1. 총 합 계 획	1. 새마을종합계획 및 조정, 실적 심사 2. 성금, 성품 관리							
	2. 소 비 절 약	1. 기본계획							
	3. 기 타	1. 새마을상황실 관리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함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새마을 지도제	1. 새마을 지도자 관리	1. 새마을지도자 육성 2. 새마을장학재단 운영				○	○		
	2. 자연보 호운동	1. 자연보호기본계획 및 지도방침					○		
	3. 기 타	1. 폐품수집운동 지도 2. 새마을의날 행사지도				○ ○			
새마을 교육제	1. 새마을 교 육	1. 새마을 교육계획 2. 대상자 선정 3. 새마을 교재작성			○	○	○		
	2. 새마을 홍 보	1.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실적 2. 새마을사업 기록보존			○	○			
	3. 수범사 예 발굴 보급	1. 우수사례발굴 보급				○			
새마을 사업제	1. 마을금 고 육성	1. 마을금고육성지침 (비법인) 2. 마을금고 추진실적 보고 (비법인) 3. 마을금고연합회 시지부협회 회장추천 4. 마을금고연합회 시지부 사업계획 승인				○ ○	○ ○ ○		
	2. 새마을 뒷골목사 업	1. 뒷골목사업 운영지침 2. 뒷골목사업 변경승인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제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3. 뒷골목사업 추진실적 보고				○		
	3. 새마을사업표창	1.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내신				○		
	4. 취락구조개선사업	1.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방침					○	
	5. 특별지원사업	1. 사업정산보고 2. 사업선정보고					○	
	6. 마을공동체관리	1. 등기 추진실적 보고 2. 기록보존			○	○		
	7. 새마을총련	1. 총련 제회 2. 총련 결과보고					○	
	사. 문화과							
문화계	1. 시민정시 순회	1. 시민위안행사 종합계획 2. 전전가요보급 종합계획						
	2. 종무행정	1. 종교단체 및 사찰지도						
	3. 공연자지도감독	1. 각본등 심사 2. 공연자 지도			○			
	4. 음반판매업소지도감독	1. 부정음반 단속 2. 음반 판매업소 지도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파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5. 출판사 인쇄소 지도감독	1. 출판사, 인쇄소 지도감독				○			
	6. 향토문 화전승 발전	1. 향토문화보호 2. 민속예술 발굴					○ ○		
문 화 재 제	1. 문화재 보호관리 및 보수 복원	1. 문화재 보수·복원계획 2. 지방문화재 지정 및 해제 3. 문화재 조사 4. 문화재 경상관리			○ ○			○ ○	
	2. 문화재 보호관리	1. 일반동산 문화재등록 감정계획 2. 문화재 및 민속자료 발굴조사 3. 일반동산 문화재등록 및 명의 변경 4. 일반동산 문화재 감정의뢰 5.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 ○ ○	○ ○ ○			

6. 재무국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관
			담당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가. 재정기획과								
재 정 총괄계	1. 시세및 세외수입	1. 세입금징수보고서 2.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 은행 지도감독 3. 세외수입금 징수결의 4. 과오납금정리 5. 세입실적평가 6. 과오납금환불 7.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수립 8. 세입징수액제산서						
	2. 자금 관 리	1. 자금계획수립 및 조정 2. 1일자금 수지보고						
	3. 채 권 관 리	1. 채권 현재액보고 2. 채권관리 지도감독						
세 외 수입계	1. 세 외 수입지도	1. 도로수익자부담금 과징지도 2. 세외수입분석						
나. 회계과								
관리계	1. 물 품 수급관리	1. 계획수립 2. 수급관리 실적보고 3. 재물현황 조사 4. 물품소요 조회 5. 물품의 정수사정 (T E) 6. 물품증가 및 현재액보고 7. 물품품결경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지출계	1. 결 산	1. 결산보고						○	
	2. 세 제 현금전용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제현 금 및 과부족시 동일년도 회계년도 내의 상호전용			○				
	3. 자 금 배 정	1. 예산배정범위내 지급자금 배정			○				
	4. 전 도	1. 전도자금, 개산금, 선금급의 자금정산 정산			○				
	5. 제 산 증 명	1. 각급기관에서 제출된 제산 증명서류의 수합 보고 2. 제산증명작성 제출 3.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 액 보고			○		○ ○		
	6.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및 유가증권	1.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 증권 출납 보관			○				
다. 세 정 과									
세정계	1. 세 정	1. 세정기본계획						○	
심사계	1. 심 사	1. 재조사 청구 처리 가. 연기통지 및 보정요구 나. 취소, 경정 다. 기각, 각하 결정 2. 심사청구 진달			○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3. 재조사청구 분과위원회 회운영 4. 취하원 처리 5. 심사청구용인 결정사항통지 6. 심사청구, 기각, 각하통지				○		
평가제	1. 과 세 표 준 액 평 가	1.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승인 2. 기타물건(차량, 중가, 입목)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3. 율류작물 소득표준율 승인 4. 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 승인 5. 부대시설물 및 구축물과세 시가표준액 결정 6. 기타 시가조사와 관련된 가격조사				○		
라. 세무지도과								
과 정 1.2제	1. 시 세 과 정	1. 시세구과, 전수계획 2. 시세부과 목표액조전 배시 3. 부과액 집계표(세표) 총합 4. 구행정 실적심사 및 분석 5. 채납처분 지도감독 6. 조세법칙 사건처리 7. 과세대장 정비상황 지도감독				-		
조사제	1. 세 무 조사 및 세외수입 조 사	1.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조사 계획 수립 집행 2. 세무조사 결과통고 3. 조세법칙 사건 처리				-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마. 관재과									
재 산 관리제 재 산 처분제 공 통	1. 등 기	1. 등기촉탁 2. 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열람지시		○ ○					
	2. 지 적 정 리	1.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퇴 2.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정리 지시		○ ○					
	3. 공 부 정리지시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가옥대장등 공부의 정리지시		○					
	4. 공부의 교부 및 열람지시	1.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및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의 교부 및 열람지시		○					
재 산 관리제	1. 재산의 용도변경	1. 재산의 용도변경					○		
	2. 재산의 용도별 분류와 관 리 자 지 정	1. 용도별분류 (행정, 보통재산 분류) 2. 관리자 지정			○ ○				
	3. 은 익 재산처리	1. 시유화될 은익재산 신고분 조사 처리 2. 보상금 지급				○ ○			
	4. 사용료 및 교환 차 액	1. 사용료 및 교환차액의 정 수 결의 요구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5. 자 재 창고관리	1. 물품의 창고입·출고 지시		○					
재 산 처분제	1. 재 산 매 각대 및임대료	1. 재산의 매각대 및 임대료의 징수결의 2. 재산의 매각대, 임대료, 사용료 및 교환차액 등의 수납 및 납부촉구 3. 재산의 매각대, 임대료, 사용료 및 교환차액 등의 채납처분		○	○				구 4부2 과 3
	2. 재 산 매 각	1. 사유재산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2. 매도증서 및 위임장의 교부 및 재교부		○					
국 유 재산제	1. 재 산 관 리	1.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신규) 2. 국유재산 인수인계 처리 3. 국유재산 이관 요청 4. 국유재산 소관청조치 5. 은익 무주재산 신고보상금 지급의뢰			○				
재 산 감정제	1. 재 산 감 정	1. 재산감정 의뢰 2. 특별회계분, 감정수수료 청구서이송		○	○				

7. 보건사회국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가. 보건위생과									
식 품 지도제	1. 위 생 업소지도 감 독	1. 행정처분 지시 2. 지도감독 운영방침 결정 3. 식중독 4. 시민영양				○ ○ ○ ○			
	2. 조 리 사 자 격 시 험	1. 자격시험 시행계획				○			
보 건 지도제	1. 묘 지 관 리	1.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폐지 사용금지 이전 및 허 가 취소					○		
	2. 환 경 위 생 및 식품제조 업소지도 감 독	1. 지도감독 운영방침 결정 2. 부정식품 단속 3. 행정처분 지시 4. 사법 경찰관 직무취급				○ ○ ○ ○			
	3. 이 · 미 용 사 자 격 시 험	1. 자격시험 시행계획				○			
방역제	1. 질 병 예 방	1.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관 한 기본계획 2. 기본운영 계획에 의한 급 만성 전염병관리 3. 대용진료소 설치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행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4. 기정방침에 의한 약품 및 기구의 배정 5. 불량나환자 강송 6. 기생충관리 7.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보견증) 8. 급만성 전염병 및 기타 방역에 관한 통계			○				
나. 의 약 과									
병 원 운영제	1. 병 원 운 영	1. 예산조정 2. 시립병원 지도감독			○		○		
의약제	1. 의 약 업자단속	1. 의료감시계획 2. 부정의료업자 단속 및 처리 3. 약사감시 종합계획 4. 의약업자 및 의약품제조소 적발처리 5.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보사부지시)			○		○		
	2. 의 료 지 원	1.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 실적보고							
	3. 의 무 행 정	1. 한지의료업자 지역변경 허가 2. 부정의료업자 실태 및 동향			○				
	4. 의약품 등품질관리	1. 의약품등 수거지시 및 검정 의뢰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책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의약품등 검정결과 보고 3. 의약품등 자진취하 및 검 정 불합격점인지			○				
	5. 약 무 행 정	1. 부정약업자 보고 2. 생산실적 보고			○				
	6. 마약및 향정신성 약품사범 단 속	1. 마약 및 습관성 사범사건 송치 2. 마약취급자 행정처분 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수용처리				○			
	7. 마 약 행 정	1. 의료용 마약배정 2. 수사정보비 지출			○				
	8. 향 정 신성의약 품 관 리	1. 향정신성 의약품 사고발생 신고서 2. 향정신성 의약품등 실적보고 3.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수용상황 보고 4. 마약 수급관리 5. 마약 폐기허가 6.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사용 및 양도승인		○					
지도계	1. 가 족 제회사업	1. 가족계획에 관한 기본계획 2.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영조처
			담당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시 장	시 장	
다. 사 회 과									
사회제	1. 사 업	1. 사회단체 등록				○			
	단체등록	2. 사회단체 등록사항 변경				○			
	2. 사 단	1. 사단법인 설립허가 진달				○			
	법인설립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사항 변경				○			
	허 가	진 달							
	3. 사 회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진달				○			
	복지법인	2. 사회복지법인 허가사항 변경				○			
	설립인가	진 달							
		3. 임원개선 인가보고			○				
		4. 사회복지 기본재산 대체허가				○			
	4. 복 지	1. 복지시설 업무감사				○			
	시설지도	2. 복지시설 실태조사				○			
	감 독	3. 요보호자 시설수용 및 퇴원		○					
	5. 사 회	1. 사회사업요원 훈련대상자				○			
	사업요원	선정 (사회, 부녀청소년, 공통)							
	훈 련								
노동제	1. 노 동	1. 규약취소 변경 명령				○			
	조 합	2. 임원개선 명령							
		3. 결의사항의 취소 변경명령				○			
		4.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명령				○			
		5.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감사				○			
		지침							
	6. 노동조합 해산명령					○			

제 목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파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단 체 교 섭	1. 단체교섭 조정결정 2. 단체교섭권한위임 승인 3.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 취 소명령 4. 단체협약적용의 지역적 구 속력 결정 5.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 ○ ○ ○ ○			
	3. 노 동 쟁의기타	1. 노동쟁의의 폭력행위등의 중지 조치 2. 노동쟁의 신고수리 3. 직장폐쇄 신고수리				○ ○ ○			
구호제	1. 일 반 구 호	1. 구호계획 2. 구호대상자 실태조사 3. 구호양곡구입 및 배정 4. 구호물품 배정 5. 행여 사망자 처리				○ ○ ○ ○ ○			
	2. 재 해 구 호	1. 이재민 구호방침 결정 2. 이재민 구호양곡 및 물품 구입 및 배정 3.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 ○ ○	○		
	3. 이 웃 둑 기	1. 성금품모금 (이웃돕기성금품, 재해의 연금품) 및 이웃돕 기 (개나리 상조금고) 사업의 종합계획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지 장	
		2. 이웃돕기 (개나리 상조금고) 지원결정 가. 1 전당 300 만원 이상 나. 1 전당 300 만원 미만 3. 성금품 수불관리							
	4. 취로 사 업	1. 대상사업선정 2. 사업기본계획수립 3. 사업정산보고 4. 각종지시 및 보고 5. 취로구호사업추진 일일실적							
	라. 복지과								
의 료 보험제	1. 의 료 보 험	1. 의료보험조합 직제 및 정 원 (변경) 승인 및 전달 2. 의료보험조합 사무국장 임 명 승인 3. 의료보험료 적납자문 승인 4. 의료보험조합 예산 (추정) 승인 및 결산보고 5. 사업장 편입 및 탈퇴명 전달 및 통지 6. 정관변경승인 (보고) 및 신청서 전달 7. 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 청서(1,2층) 전달 및 일가봉지							

175-82

제 918 호

시

보

1982.7.7.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8. 의료보험조합 지구 대표이 사 취임승인진달 및 승인통보 9. 의료보험조합 지도점검 10. 의료 및 복지시설 설치승 인신청서 진달 및 승인(명 령) 통보 11. 의료보험조합 직원임명 및 해임보고서 12.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및 이사선출(변경) 보고서 13. 의료보험조합 소재지, 대표 이사 상호변경 보고서 14. 의료보험급여 및 수입지출 실적보고 15. 의료보험사업 국교보상금 신청 및 교부				○		
의 료 보호제	1. 의 료 행 정	1. 의료보호사업의 기본계획 2. 의료보호지정 병의원 사항 3.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사항 4.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5. 의료보호대상자 선정 및 확정 6. 성병환자 의료보호 7. 대불금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기						협조처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8. 구료청원 9. 의료보호 교육				○			
직업 안정제	1. 직업 안정	1. 1.2종 직업안내소 허가 및 취소 2.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 속계획 3. 직업안정위원회 운영				○			
	2. 직업 훈련	1. 주요운영 방침 결정 2. 지도감독 3. 직업훈련 추진기금운용 4. 직업훈련 세부계획 변경				○	○		
	3. 후생 시설지도 감독	1. 후생시설 업무감사 2. 후생시설 실태조사			○	○			
	마. 부녀청소년과								
각 제 공 통	1. 사회 복지법인 업무관리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진달 (탁아사업법인제외)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탁아사업 법인) 3. 사회복지법인 허가사항 변 경허가 및 진달 4. 사회복지법인 허가사항 변 경 (탁아사업 법인) 5. 사회복지법인 임원개선 인가보고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복 리 시설지도 감 독	1. 복리시설 양곡배정 2. 복지시설운영 지도감독			○ ○ ○				
	3. 복 리 시설 및 단체보조 금 교부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진달 2. 보조사업 계획 및 변경 승인			○		○		
	4. 사 단 법인업무 관 리	1. 사단법인 인·허가 (변경) 신청 서 진달 2. 사단법인 지도감독			○ ○				
가 정 복지제	1. 부 녀 청 소 년 업 쿠	1. 부녀청소년 복지업무 기본 계획수립 2. 부녀청소년 행정종합 조정					○		
	2. 가 정 문제예방 및 상담	1. 가정상담소운영 지침수립 2. 각종 통계보고 및 평가			○ ○	○			
	3. 가 정 의해제도	1. 종합계획 2. 위반자단속 및 처분지시 3. 업소지도관리			○ ○ ○	○ ○			
부녀제	1. 일 반 여 성 지도제몽	1. 사업시행 및 평가 2. 사업장운영 및 지도감독 3. 여성단체지도 육성 4. 부녀지도 협의회운영 (새마 울부녀회)				○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치
			담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5. 사업실적지도 및 통제 보고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훈련			○				
	2. 요보호 여성선도	1. 사업시행 및 지도 2. 부녀상담소 운영 3. 시설운영 및 지도감독 4. 요보호여성 수용의뢰 상담 조치 5. 각종통제 보고			○		○		
청 소 년 제	1. 일 반 아 동 복리증진	1. 계 획 2. 세부시행계획 3. 결과보고			○		○		
시 설 지도제	1. 아 동 복리시설 지도감독	1. 요구호자 시설수용 및 퇴원 2. 시설장의 제정원 추천 3. 미인가 시설단속 4. 불량아단속 및 조치			○				

8. 산업경제국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가. 상공과									
상정계	1. 일반 시장관리	1. 유통시설개선 2. 유통시설 용자 추천 3. 시장 개설허가 관련 법규 지속 여부 확인 4. 시장 개설허가 사후 관리 지도 5. 소매상의 연쇄화 사업운영				○ ○ ○			
	2. 도매 시장관리	1. 도매시장 개설 및 폐쇄 1-1. 도매시장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기본방침 2. 유통시설 용자 추천 3. 시장개설허가 관련 법규 4. 도매시장 용자 추천 5. 도매시장 지정도매인 대표 자 변경승인 6. 도매시장 지정도매인 거래 보증금 공탁 및 해제 7. 도매시장 시설개선(증, 개 축) 승인 8. 지정도매인(법인) 임원 변경승인 9. 도매시장업무 보고				○ ○ ○ ○ ○ ○ ○ ○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10. 산업동원 세부계획에 대한 종합계획							
유 통 지도제	1. 소비자 보호	1. 소비자보호 기본 방침 2.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사업 승인 및 변경승인 3. 소비자 보호단체 신고 수리 4. 소비자 보호단체조항 신청 및 등록 5. 물가단속계획 수립							
	2. 경찰제	1. 가격표시및 상도의 양양계획 수립							
	3. 종합 구관장 관리	1. 종합구관장 기본계획수립 2. 종합구관장 업무지도							
	4. 상품 권관리	1. 전본등록수리 및 취소 2. 공탁명령 3. 공탁신고 처리 4. 발행상황 통제 5. 공탁물 반송 승인 가. 500만원 이상 나. 500만원 미만							
	5. 제량기 검정	1. 제량기 자치관리 인정 2. 제량기 자치관리업체의 사후 관리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공업단지조성 계획							
	3. 광산업	1. 광업에 대한 사항			()				
	4. 염제조	1. 염제조업에 관한 사항 2. 염제조 허가신청 진달			()				
	5.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1. 조합설립 인가 2. 조합업무 감사 3.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 4. 추가개정 예산 및 예산유보 승인 5. 조합정관 및 규정 승인 6. 조합지도감독 및 보고 7. 임원임명승인 8. 임원선임조치			()				
	6.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1. 자금지원 기준설정 및 대상자 선정 2. 자금지원 추천 3.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선정 및 지정 4.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대체지정 5. 지정업체 및 수출업체 사후관리 6.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7. 중소기업지원	1.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운영 2. 노후 공작기계대체 및 폐기보조금 지급방침 결정				○			
	8. 사업등록	1. 기계공업등록			○				
	9. 공장새마을운동	1. 공장새마을운동 및 실적평가 결과보고 2. 공장새마을운동 및 실적평가 방침결정				○			
	10. 제조업	1. 국내제작용 견본품 수입추천			○				
	11. 수출진흥	1. 수출제회설정 및 목표액배정 2. 수출독려 3. 수출실적보고 4. 수출공산품 생산기업체 신고서 전달			○	○			
	12. 기능인력양성	1. 기능인력 양성계획				○			
표준계	1. 공산품품질관리	1. K·S 표시품 표시별정등 처분 2. K·S 표시품 사후관리 3. 일반공산품 관리 4. 품질관리 추진본부 운영 5. 품질표시 지도 명령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나. 연료과									
석탄계	1. 무연탄 수급관리 및 연탄 품질관리	1. 무연탄수급계획 (기본방침) 2. 석탄가공업체별 저탄목표량 책정 3. 석공민수용탄 업체별 배정 4. 무연탄 수급조정 5. 석탄 가공업체 저탄량 확인서 발급 6. 확정된 연탄수급 시책 7. 연탄수급실적조치 및 회신 8. 석탄가공업의 허가 및 폐업 9. 석탄가공업의 승계 10. 석탄가공업휴업 및 개시 신고 11. 무연탄 품질관리 12. 연탄출하증 관리 13. 연탄공장 지도 감독							
석유 가스계	1. 석유류 수급	1. 석유대리점 허가 2. 석유대리점 변경, 승계신고 3. 석유대리점 복(개)업 및 재개 신고 4. 석유판매업소 지도감독							
	2. 고압 가스수급	1. 액화석유가스 제조업허가 2. 액화석유가스 제조업 변경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및 안전 관리	허가 3. 일반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변경허가 4. 고압가스 제조업소 지도 감독 5.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신고 6. 권한위임업무(검사, 교육)에 대한 한국가스 안전공사감독			○				
	3. 지역 냉난방 계획	1. 지역냉난방 기본계획 2. 지역냉난방 사업허가 3. 지역냉난방사업 허가사항 변경			○			○	
	4. 간이 가스사업	1. 간이가스 사업 허가 2. 가스공급계획 3. 지도감독			○				
	5. 저유 시설전설 계획	1. 기본계획 및 방침결정 2. 세부집행 및 시공관리			○			○	
연 료 개발제	1. 연료 개발수급 종합계획	1. 기본계획 및 방침결정 2. 대외협조 3. 일반가스사업 허가 4. 일반가스사업 변경허가 5. 가스공급시설, 지역등 변경 허가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지	재 장	과 장	국 장	부시 장	
		6. 사업휴지 (폐지) 허가 7. 가스용품허가 및 변경허가 8.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허가 9.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 10. 법인의 합병, 해산 11. 공급규정 변경승인 12. 특정공급 계약승인 13. 공급조건 (조건변경) 승인 14. 공사계획 (변경) 승인 15. 사업개시, 지위승계 신고 16. 안전관리자 채용 허입 신고						
	2. 현대 자위연료 개발 및 연구	1. 기본계획 2. 세부추진계획 3. 기 타						
	3. 연료 대책본부 운영	1. 기본계획 2. 기 타						
	4. 산업 동원자원 의조사관 리및동원	1. 기본계획 2. 자원조사관리 3. 기 타						
열관리 계	1. 에너지 관리	1. 에너지 절약시책 2. 지정 에너지관리 대상자						

제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지도감독 가. 중요 사항 나. 경미한 사항 3. 열사용기자재 사후관리 가. 중요사항 나. 경미한 사항 4. 검사대 상기기 사후관리 5.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 공업채 관리 6. 연탄가스위해 방지 7. 소관국가 기술자격정지 및 취소				○		
	2. 전기 행정	1.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가. 중요 사항 나. 경미한 사항 2. 전기용품 사후관리 가. 중요 사항 나. 경미한 사항 3. 전기공작물 사후관리 가. 중요사항 나. 경미한 사항 4. 농어촌 전화사업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합 조 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다. 농 축 과									
농 수 산 계	1. 농 정 관 리	1. 농업단체 지도 육성 2. 농업단체 설립인가 (전달) 3. 농지개량 조합장 임명 4. 농지개량 조합 기재인가 5. 농지개량 조합 예산인가 6. 조합비 부과 인가 7. 농지개량조합 각종 신고 8. 농지개량사업 신청인가 및 보조금 교부 9. 농업자재 보급 강력 10. 종묘알선 11. 농업통제조사 보고 12. 농수산물 증산 기본계획 13. 식물방역법에 관한 사항 14. 비료분석 의뢰 15. 부정농업 자재 단속 16. 농업에 관한 보고 17. 비료제조 영업허가 18. 비료영업허가 사항 (등록) 변경 19. 비료 농약 검사외뢰							
	2. 수 산 전 공	1. 어업면허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합	결 제 권 자					영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13. 낙농장려 사업지도 14. 축산강습회 개최 15. 기업축산등록 및 지도육성 16. 사료공급 계획 17. 불량도축거세 사업 18. 자급사료 증산 19. 사료배정 20. 지성민간 종축장 관리지도 21. 종축검사관리 및 지도 22. 종축매매 배부알선 23. 축산물 및 사료지세 조사 24. 배합사료공장 허가사항 변경처리 25. 목야거렁 사업지도 26. 가축실태 파악			()			
가 축 위생제	1. 가축 위생관리	1. 작업장 시설개선 2. 부정 축산물등의 단속 3. 가축방역 실시 4. 서울시 수의사회 육성지도 5. 축산물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정 축산물 단속계획 및 처리 7. 기정방침에 의한 가축방역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8. 가축방역운영 및 처리 9. 공수의 지도 10. 동물약품등 생산 및 판매 실적 보고 11. 기정방침에 의한 축산물 및 가공품검사 업무			○			
라. 양정과								
양정제	1. 양곡 수급조절	1. 양곡수급계획 2. 유통체제지침 수립 시달			○			○
	2. 곡가 조사	1. 양곡시가 조사			○			
	3. 정부 양곡관리	1. 보관창고 2. 창고등급사정 3. 창고사고처리				○	○	○
	4. 양곡 매매업 허가	1. 양곡 매매업 (중개업) 의 가. 신규허가 및 행정처분 나. 허가사항 변경 다.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라. 양도, 임대승인 마. 허가증 재교부 2. 양곡부정업소 행정처분지시 3. 양곡부정유통 단속				○	○	○
	5. 양곡 소비절약	1. 계획 및 지침시달 2. 지도제몽 및 단속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위반업소 처리 4. 단속결과 보고			()				
	6. 곡가 조절양곡 관리	1. 일일방출 지령 2. 방출지령서 발급 3. 매도통지서 발급 4. 부정관리양곡 수불보고 5. 반입방출 재고확인 6. 관수용 양곡배출 7. 관리양곡 인수도 지령 8. 인출고 일보 처리			()				
	7. 정부 양곡보관 관리	1. 보관확인 2. 훈증소독			()				
	8. 양곡 수매	1. 수매지침시달 2. 수납통리 3. 수납상황보고 4. 마감보고 5. 대금납부 고지서			()				
	9. 사무 관리	1. 구매 및 수리요구			()				
경리제	1. 양곡 관리특별 회계	1. 세 입 가. 양곡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나. 잡수입			()				

제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다. 내부방침으로 확정된 채권 라. 기 타 2. 세 출 가. 급여, 수당, 여비 및 공 공요금 나. 국고납입고지에 의한 지 출 원인행위 다. 단가수의 계약된 프린트 및 공판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 라. 예산회계법 시행령제 112조 4, 5, 8 항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 마. 법령계약 또는 내부방침 으로 확정된 지출원인행위 3. 지출행위 4. 결산 및 보고			○		○		
	2. 양곡 관리기금 회계	1. 세 입 가. 양곡관리관이 매도 결정 한 양곡대금 나. 과오납금 다. 법령 계약 또는 내부방 침으로 확정된 채권 라. 기 타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임준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구 장	부 시 장	시 장	
		2. 세 출 가. 국고납입고지서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2 조 4, 5, 8 항에 의한 지출 원인 행위 다. 법령제약 또는 내부방침 으로 확정된 지출원인행위 라. 기 타 3. 지출행위 4. 결산 및 보고							
	3. 세입 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2. 유가증권의 출납							
조작계	1. 양곡 조작	1. 양곡도간반입실태 조사 2. 조작지형 3. 양곡발송 농보 4. 양곡반입 실적보고 5. 양곡입하 보고처리 6. 양곡운송사고 처리							
	2. 양곡 조작및 도착확인	1. 양곡도착 확인 2. 양곡조작(입출고, 운반)형 구 확인							

계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3. 관리 양곡운반 일반채정			○				
	3. 양곡 가공	1. 원료공장별 배정 및 지령 2. 가공실적 3. 가공청산 및 보고 4. 가공지령서 발급 5. 가공원료 헐가마니 처리 6. 가공일보 처리			○ ○ ○ ○ ○ ○				
	4. 포장 자재처리	1. 포장자재 공급별 배정 2. 헐가마니 수불 보고 3. 헐가마니 매도 및 청산			○ ○ ○				
	5. 가공 공장	1. 도점업허가 2. 가공공장 이설 합병 변경 승인 3. 명리변경 승인 4. 미강착유공장 지정				○ ○ ○ ○			
	6. 가공 부산물 처리	1. 공장별 부산물 배정 2. 매도통지 및 인수도 지령 3. 탈지강보고 접수처분 및 정리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도로)				○			
	2. 보상	1. 보상에 관한 기획·조정및 주요방침 결정 2.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3. 미불보상에 산구간 조정 4. 미불보상에 산 배정협조 5. 보상자료 조회회신				○ ○ ○ ○		○	
시 설 관타계	1. 시설 물관리	1. 시설물관리 주요방침 2. 육교 및 아취사용승인 3. 지하상가관리 지도감독			○	○		○	
	2. 도로 부지관 리의지 도감독	1. 도로부지관리의 주요방침 2. 도로용도폐지의 지도감독 3. 국유도로용도폐지보고 및 재산인계 4.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 수의 지도감독 5. 국유도로관리청 지정신청 6. 국유개산소관점조사보고 7. 도로장애물정비에 관한 지 도 감독			○ ○ ○ ○ ○ ○ ○	○ ○ ○	○		
	3. 유료 도로관 리의지	1. 유료도로 개설허가 (신청) 2. 유료도로 통행요금 책정 3. 수입금일보처리			○			○ ○	

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구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농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결정 및 지적승인 4.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수 립 및 변경 (공원, 유원지, 공공공지, 공동묘지, 저수지, 시설녹지 사방설비) 가. 1,650 ㎡ 이상 나. 1,650 ㎡ 미만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지적승인				○			
치분제	1. 체비지 매각	1. 체비지 매각방침 결정 2. 체비지 매각 가. 가격결정 나. 계약체결 3. 매각임대료의 납부독촉 4. 토지사용 승락서 발급 5. 체비지 감평대금 지출 6. 체비지 매각 세입조정 결의 7. 체비지 명의변경승인 신청 8.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 9.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협조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건 대 령 가				
			단 위 가	계 장	부 장	보 조 장	기 타
		10. 소유자 확인원 11. 토지대금 완납 증명 12. 사실확인원 13. 주소 변경신청					
나. 시설제회과							
각계 공통	1. 계획	1. 도시계획시설의 기본계획 2.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 관공 탕, 공용의 전차, 전기공압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방조설비, 연수시설, 문화시설, 종합의표시설, 무선시설, 학교 (초, 중, 고, 전문대학) 등의 설치계획인가 및 시행허가 또는 변경					
시설제 회1계	1. 계획	1. 도시계획시설중 공공의 주차 스태기 및 조감하의 등 하천, 공급설비 종합의표시설, 무선무 선설비 등 가. 6,600 ㎡ 이상 시설의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나. 6,600 ㎡ 이상 도시계획시설 정 변경 및 지적승인 다. 6,600 ㎡ 미만 시설의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제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라. 6,600 ㎡미만의 도시계획 결정 지적승인 2. 시 장 가. 도매시장, 백화점의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상가시설의 결정 지적승인 다. 소매시장의 기본계획 라. 소매시장의 결정, 지적승인 3. 운동장 가. 종합경기장, 사격장, 골프장 의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나. 상가시설의 결정, 지적승인 다. 기타 운동장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라. 기타 운동장의 결정 지적 승인 4. 기타시설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나. 결정, 지적승인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설계 획2제	1. 계획	1. 도시계획시설승 가. 학교기본계획(초, 중, 고) 수립 및 변경 나. 학교기본계획(대학교)수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현조리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장	시 장	
		림 및 변경 다. 학교시설결정 (초, 중, 고, 전문대학) 라. 대학교의 입안, 지적승인 사업 시행허가 2. 도서관, 연구시설, 도살장, 화장장, 문화시설등의 가. 기본계획 나. 결정 및 지적승인 3.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토계획1계	1. 계획	1. 도시계획시설중 폭 30 m 이상 의 도로 및 광장, 철도, 계도, 삭도, 고속철도, 운하, 강만, 공항 시설등의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나. 결정 및 지적승인 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지적승인 2. 도시계획시설중 폭 30 m 미만 도로의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나. 결정, 지적승인 및 기타 3. 고속철도중 부대되는 시설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나. 결정, 지적승인				○			
가로계 획2계	i. 계획	1. 자동차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제외) 하수처리장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나. 결정 및 지적승인 2. 자동차검사장, 주차장, 공동구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나. 결정 및 지적승인 3. 폭 12 m 이상 25 m 미만의 도 로 및 자동차정류장 (시내버스 정류장) 하천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나. 결정 및 지적승인 4. 폭 12 m 미만 도로 및 하수 도 (하수처리장 제외)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나. 결정 및 지적승인 5. 성미한 사항 변경						○	
		다. 구획정리과							
정리제	1. 정리 업무	1.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 입 현재표 작성보고 2. 채납처분에 관한 사항 가. 공매처분 나. 재산등기압류 및 등기압류				○			
							○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환지 제 회	1. 가환지 지정 2. 환지제 회 공 랑 공 고 3. 환지제 회 인 가 및 환 지 예 정 지 지 정 공 고 4. 환지제 회 공 랑 에 대 한 의 견 서 처 리 5. 환 지 예 정 지 변 경 (분 합) 처 리 6. 등 기 부, 지 적 공 부 열 랑 신 청 7. 환 지 제 회 변 경 공 랑 공 고 8. 환 지 예 정 지 변 경 지 정 공 고 9. 환 지 처 분 공 고 10. 종 전 토 지 분 합 신 고 서 경 유 11. 지 구 제 분 합 수 속				○ ○ ○ ○ ○ ○	○ ○		
라. 재 개발 과									
재 개발 제 회 제	1. 도시 재 개 발 사 업	1. 도시 재 개 발 기 본 제 회 수 립 2. 도시 재 개 발 구 역 지 정 3. 도시 재 개 발 사 업 제 회 결 정						○ ○ ○	법 무 당 관
재 개발 사 업 제	1. 도시 재 개 발 사 업	1. 도시 재 개 발 사 업 신 청 기 간 지 정 2. 도시 재 개 발 사 업 제 3 개 발 자 지 정 3. 도시 재 개 발 사 업 시 행 인 가 4. 도시 재 개 발 사 업 관 리 처 분 제 회 인 가				○ ○	○ ○		

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계 권 자						협 조 자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5. 특정가구 정비지구 건축계획 결정 6.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미한 입가, 변경 및 건축 설계 변경 7. 도시재개발구역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 8. 도시재개발사업 준공 및 완료 공고 9. 도시재개발사업 각종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개발사업 행정지원 지도 감독 11. 재개발지구내 건축허가 가. 연건평 33,000㎡ 이상 나. 연건평 33,000㎡ 미만 12. 재개발지구내 건축물 준공 및 가사용 승인 가. 연건평 16,500㎡ 이상 나. 연건평 16,500㎡ 미만 13. 특정가구 정비지구 건축 계획 공고 및 송달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마. 지적과								
지 적 관리제	1. 지적	1. 지적업무 기본계획 수립 2.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3. 토지조사부 관리 및 소송 수행			○ ○			○	
지적 1 제	1. 지적 측량	1. 지적 공부의 관리지도 2.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3. 지적기초점 설치 4. 기초점관리지도 5. 대행법인 감사 6.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7. 축척변경 계획수립 및 사업 승인 8. 지적복구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지도 9. 지번 갱정 세부계획수립 및 승인			○ ○ ○ ○ ○ ○ ○ ○ ○	○ ○ ○ ○ ○ ○ ○ ○ ○			
지적 2 제	1. 지적 전산	1. 지적전산화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2. 토지이동처리 3. 지적도 조제 및 재조제 4. 토지(임야)대장집계			○ ○ ○ ○	○ ○ ○ ○			

10. 건설관리국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가. 건설행정과								
전 설 행정계	1. 건설 업면허 관리 (단종 공사업)	1. 단종공사업의 신규면허 2. 단종공사업의 면허갱신 3. 단종공사업의 양도양수 속 합병인가 4. 단종공사업의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5. 단종공사업 실태조사 6. 건설업법 위반자 조치의뢰 7. 건설업 (일반 및 특수공사 업) 면허신규 전달						
	2. 중기 관리	1. 중기조종사 면허시험 계획 2. 중기 대여 3. 중기 단속 4. 중기관리법 위반자 조치 5. 중기의 기술관리 6. 중기면허사 면허 7. 중기정바사 면허의 취소 정시						
	3. 시설 및 장비 동원	1. 건설업체 및 중장비 동원 에 관한사항						
전 설 기획계	1. 건설 계획	1. 건설계획 종합 2. 건설사업종합진도 파악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도로)				○			
	2. 보상	1. 보상에 관한 기획·조정및 주요방침 결정 2.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3. 미불보상에 산구간 조정 4. 미불보상에 산 배정협조 5. 보상자료 조회회신				○ ○ ○ ○		○	
시 설 관타계	1. 시설 물관리	1. 시설물관리 주요방침 2. 육교 및 아취사용승인 3. 지하상가관리 지도감독			○	○		○	
	2. 도로 부지관 리의지 도감독	1. 도로부지관리의 주요방침 2. 도로용도폐지의 지도감독 3. 국유도로용도폐지보고 및 재산인계 4.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 수의 지도감독 5. 국유도로관리청 지정신청 6. 국유개산소관점조사보고 7. 도로장애물정비에 관한 지 도 감독			○ ○ ○ ○ ○ ○ ○	○ ○ ○	○		
	3. 유료 도로관 리의지	1. 유료도로 개설허가 (신청) 2. 유료도로 통행요금 책정 3. 수입금일보처리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지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도감독	4. 통행권수불			○				
	나. 도로과								
도 로 계획제	1. 도로 사업종 합계획 수립	1. 각종 도로 및 이에 부수 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고 가도로, 입체교차, 지라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공강)의 종합계획수립 2.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3. 도로사업에 따른 각종 통 계 및 조정 4. 구척 시행도로사업의 기술 협의 5. 도로조정기반 토목설계(도 로공원, 중앙분리대, 가로식수 대) 및 시공지도 협의 6. 민자로 유치도로사업자 선정 및 수탁협약 체결 7. 민자유치도로사업의 공사비 예치						○	
도 로 시설제	1. 풍수 설해대 책	1. 도로의 풍수설해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술 상협조	1. 도로점용허가 공도 폐지 또 는 공작물설치에 관한 기술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파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상 협조							
	3. 도로 복구에 관한종 합계획 수립조 정	1. 주요간선도로굴착조정 및 복구공사 조정 2. 지선도로굴착사항 조정 3. 기타 경미한 굴착 및 복 구사항				○			
	4. 포장 도로진급 보수종합 계획수립 조정	1. 포장도로손괴에 따른 긴급 복구계획				○			
	5. 도로 시설물 보수계 획조정	1. 주요도로의 시설물보수에 따른 계획 2. 경미한 시설물보수작업 지 시				○			
	6. 도로 포장계 획	1. 포장도로의 개수에 따른 종합계획 2. 미포장도로의 포장계획				○			
기전계	1. 가로 등및보 안등시 설종합	1. 가로등 및 보안등시설 종 합계획수립 2. 지하도, 지하광장 및 터널 등의 조명 및 환기설비공사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제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계획	계획 및 조정							
	2. 기계 설비시 설공사 계획	1. 도로, 지하도의 기계설비시 설공사계획 2. 지하광장 및 터널의 기계 설비시설공사계획				○			
다. 건축지도과									
건축 행정제	1. 일반 행정	1. 건축물통제 기본계획 2. 건축사 지도감독 계획수립 3. 위반건축사 조치				○			
	2. 기타	1. 건축물 시설동원 2. 건축상 제도운영 기본계획 3. 건축상 시상 4. 광고물 관리기본계획 5. 광고물 정비실시계획			○				
건축 계획제	1. 건축 계획수립	1. 건축계획수립 및 규제 2. 주요지역 도시설계							
	2. 건축 계획심 의	1. 건축물의 미관에 관한 조 정통제					○		
건축지 도 1,2 계	1. 건축 허가및 준공검 사	1. 건축허가 사전승인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11층 이상) 2. 아파트 중간검사 3. 아파트가사용승인 및 준공				○		○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검 사							
	2. 건축 물유지 관리	1. 기본방침 2. 기타 유지관리					○		
	3. 기존 건물단 장	1. 옥상 무허가건물 정비				○			
	4. 위험 시설물 관리	1. 위험건축물 및 축대관리 2.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				○ ○			
라. 주택기획과									
주 택 행정제	1. 민영 주택건 립	1. 아파트건설 기본계획 (입지 심의) 의 결정 2. 아파트건설사업 계획승인 3. 아파트특별공급 및 공공시 설부담등 주요조건의 변경승 인 4. 대지 및 건립규모의 변경 승인 5. 사업주체, 공사기간 설계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6. 민영주택건축심의결과 처리 7. 아파트 분양승인 8. 민영주택건립의 지도제몽					○ ○ ○ ○ ○ ○ ○ ○	○	

제 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 조 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9. 사업계획승인신청 보완통지 10. 과세자료 통보			()				
주 택 계획제	1. 시영 주택 건 립	1. 시영주택건립계획 2. 시영주택분양가격 결정						()	
	2. 주택 건설제 회	1. 주택건설 중·장기계획 2. 4년도 주택건설 종합계획						()	
	3. 예산 의총판 및조정	1. 주택비 특별회계 예산총판 조정							
용지제	1. 시영 주택 건 립토지 매입및 처분	1. 토지매입계획 및 불합주 용지매각 처분결정 2. 재산감정의뢰 및 재감정 결정 3. 보상금 재심의 요구 4. 토지, 건물, 지장물이전등 보상집행 5. 보상금지급 및 사전확인 6. 토지분할 신고처리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및 등 의변경							

175-120

제 918 호

시

보

1982.7.7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8. 매입토지분할 측량의뢰 9. 축락등기 의뢰 10. 토지사용 승락 11. 재산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 ○ ○ ○				
	2. 시영주 택건설에 따른자재 수급계획 및품질검 사	1. 자재수급계획 2. 품질검사			○	○			
	3. 주택 자재생 산업	1. 품질관리 계획 2. 생산업체 지도감독			○	○			
주 택 관리제	1. 주택 관리	1. 시영아파트 분양(배정) 2. 민영아파트 배정(철거민) 3. 상기 분양계약체결 및 위 임장 교부 4. 주택관리와 지도감독			○ ○ ○	○ ○ ○		○	
	2. 분양 금징수	1. 시영주택의 조정징수 및 납입금의 총괄 2. 세입금 수입보고 3. 체납금 납입독촉 및 최고 4. 보상금 지급		○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별조치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3. 시영주택보수 (시민아파트)	1. 시영주택 보수계획 2. 시영주택보수계획을 위한 자료조사 3. 시영주택보수에 대한 시도 감독						
	4. 시영주택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1. 시영주택 안전진단계획 및 결과조치 2. 안전진단 실시						
	5. 공동주택관리	1. 공동주택 관리인변허 2. 공동주택 관리인변허사항 변경등 3. 공동주택 공동변경등 사후 관리						
마. 주택개량과								
개량 계획	1. 주택개량재개발사업	1.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조정 2. 임시 이주지 승인 3. 시민여론 및 동향처리 및 보고 4. 기방침결정된 사항처리 및 보고 5. 재개발사업 국민주택자금 기채 및 예산배정						

제 목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관재 업무	1. 분할신고처리 2.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3. 용지매수에 대한 분할측량 의뢰 4. 등기촉탁의뢰 5. 수용토지 환매 6. 토지가격 감정의뢰 7. 토지사용승락 8.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 9. 제증명발급 10. 매각재산의 증감평 조정 11. 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대 장등본교부 및 열람신청 12. 등기부 교부 및 열람신청 13. 체비지분양지 매각방침 결 정 14. 분양지 매각 15. 체비지 매각 가. 가격결정 나. 계약체결			○				
	3. 분양금 징수	1.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세입 징수보고 2. 주택재개발비 징수결의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영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4. 무허가건물	1. 기존 무허가건물정리 기본 지침 2. 현금보조 철거계획 가. 100 동 이상 나. 50 동 이상 다. 50 동 미만 3. 철거이주 정착계획 4. 무허가건물정리 통계보고							
개 랑 1 계	1. 주택 개 랑재 개발사 업	1.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2. 재개발구역 지정 3. 재개발구역 지적승인 4.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5. 재개발사업 신청기간 규정 6.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 지정 7.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표 8. 사업시행인가							
	2. 특수 사업	1. 불량건물 지역등 특별지정 정비계획수립 2. 사업시행							
	3. 양성 화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기본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지침							
개 략 2 계	1. 주택 개 략제 개발사 업	1. 기술조사 측량 2. 관리처분 계획공람공고 및 인가 3. 건축계획 공람 및 승인 4. 관리처분 계획변경 가. 공람 및 인가 나. 관계인 협의 및 기타 경미한 사항 5. 건축계획승인 변경 가. 공람공고 나. 기타 경미한사항 6. 재개발사업행위 완화지침 7. 환지지시측량 및 필증발급 8. 재개발지구의 지력개발승인 가. 1,650 ㎡이상 나. 1,650 ㎡미만 다. 기타 경미한 사항 9. 지구계분할측량 및 대위 신고 10. 종전 토지분할신고서 경유 11. 환지확정측량 및 확정처분 12. 환지확정처분 변경 가. 환지확정내용 점검				○		○	

제 목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영조처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나. 기타 경비한사항 13. 특수사업 시행방침							
단속계	1.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	1.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2.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처리 3. 한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지시 및 순결처리							
	2. 항공사진촬영 및 관독	1. 한축도의 다목적활용계획 및 보급 2. 항공사진촬영에 따른 비상물체 관독 3. 항공촬영비공승인 및 기승인 협조 4. 항공사진대여 및 수불관리 5. 한축도 및 약식 한축도 수불관리							

11. 환경녹지국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행조처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가. 청 소 과								
청 소 행정계	1. 오물 수거수 수료과 심	1. 오물수거수수료 과징실적 2. 오물수거수수료의 상수실적 평가 3. 세입상황 보고처리			○			
	2. 노사 협조	1. 단체협약 체결 2. 노사협의회 개최			○		○	
	3. 퇴직 금지급	1. 청소원 퇴직금 지급 2. 청소원 공상금 배정			○	○		
	4. 청소 장비배 정	1. 청소차량 대폐차계획 2. 청소차량구간 T/E조정 3. 청소장비, 기구, 기계의 관 리 및 운영				○	○	○
작업관 리 1, 2 계	1. 종합 계획	1. 쓰레기(분뇨)수거 및 처분 분계회						○
작업관 리 1 계	1. 쓰레 기수거 작업관 리	1. 특별청소 실시계획 2. 비수거지역 지정 3. 수거작업 지도감독 4. 가로휴지통 설치계획 5.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감독 6. 쓰레기 처분장 조정			○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계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정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2. 청소 인부관리	1. 청소원 정원 조정 가. 정원증감 나. 정원조정 (구간) 2. 청소원 지도감독							
	3. 사고 처리	1. 청소차량 사고처리 (배상 및 구상)							
작업관 리 2 계	1. 분뇨 수거(정 화조청 소) 처 리 및 지도감 독	1. 분뇨수거 (정화조청소) 지역 책정 2. 분뇨수거 (정화조청소) 실적 통계 및 분석 3. 암수거 및 투기단속 고발 4. 분뇨처리장 지도감독							
	2. 시설 물관리	1. 오물청소법에 의한 반소개량 2. 분뇨뱅크 용도 제지 3. 분뇨뱅크 유지관리							
	3. 분뇨 수거정 화조청 소및정 화조설 제시공 업체지 도감독	1.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 체 지도감독 2. 정화조 설계시공 (정화조제조 업체포함) 제조업자 지도감독 3. 기성 정화조 품질검사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랑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사 장	시 장	
	4. 공중 ●변소	1. 기본계획 수립조정 2. 공중변소 설치 조정 3. 지도감독			○	○		○	
위 생 시설제	1. 시설 물관리	1. 오물처리장 설치계획 및 건 건설 2. 오물종말처리방법 개선 3. 간이저장탱크시설공사 4. 기타 오물처리에 관한 기술 개발				○ ○ ○		○	
나. 환 경 과									
환 경 행정제	1. 공해 방지기 본계획	1. 공해대책종합조정 2. 유관부서 협의 3. 자료수집 및 배부			○	○		○	
	2. 교육	1. 공해관계요원 교육				○			
	3. 공해 관계위 원회운 영	1. 각종위원회 운영 (안전제출, 회의록작성) 2. 분쟁조정신청서 중앙조정위원 회 이송 3. 분쟁조정신청 접수 조사 4. 분쟁조사위원 지명 5. 분쟁조사위원증 발급			○ ○ ○	○ ○ ○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협조처
			담당 지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4. 배출 시설설 치허가 및신고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심의 요청 2. 배출시설 허가심의 통보 3. 무허가시설 단속 및 적발 조치 4. 위법시설 폐쇄조치							
	5. 산업 폐기물	1. 폐기물 운반신고처리 2. 폐기물 종말처리 신고 3. 폐기물배출(처리)업소단속							
	6. 공해 업소이 전	1. 이전계획수립 2. 이전명령 사전 승인 3. 이전명령 사전 협의 4. 이전명령 5. 업소지도 확인							
	7. 조업 정지	1. 조업정지 사전 승인							
	8. 환경 영향평 가	1.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전선정 2. 환경영향평가심의진행							
	9. 기타	1. 환경감시원 등 발급 2. 공해업무 지도단속 3. 방제시설업 등록사항 통보							
환경 1 계	1. 개선	1. 오염(대기수질)배출 시설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명령	1. 개선명령 및 대책 2. 개선명령 및 기간연장 3. 재개선 명령 4. 재개선계획서 징취 5. 재개선 사전검토 및 개선 결과 처리					○		
	2. 수질 측정망 관리	1. 수질측정망 유지관리 2. 측정기기 유지관리			○				
	3. 오염 물질배 출업소 지도단 속	1. 고발 및 제재조치 지시 2. 지도 및 단속처리 3. 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4. 환경감시원배치 및 지휘감 독 5. 수질 및 토양오염 발생원 에 대한 지도감독				○	○		
	4. 배출 시설의 기술검토	1. 수질 및 토양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기술적 검토			○				
환경 2 계	1. 대기 보전업 무기본 계획및 행정처 리	1. 대기오염방지 대책의 기본 계획 2. 대기오염조사 및 분석 3. 계획 및 방침에 의한 행 정처리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재 권 자						영조자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2. 대기 측정망 관리	1.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2. 측정기기 유지관리							
	3. 자동차 차공해 대책기 본계획	1. 자동차공해 대책의 기본계획 2. 자동차공해 조사 및 분석 3. 계획 및 방안에 의한 행정처리							
	4. 대기 오염배 출업소 지도단 속	1. 고발 및 폐쇄조치 2. 지도 및 단속처리 3. 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4. 환경감시원 배치 및 지휘 감독 5. 대기오염 및 고온, 건조, 악취발생원해 예방 지도감독							
다. 공 원 녹 지 과									
녹지 행정제	1. 임야 관리	1. 국유임야분포 배치 2. 국유임야 소관 조차 3. 국유임야내 임산물 매수처리 4. 광업 출원지 원지조사 5. 기타 임정에 관한 정미와 사항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조정계	1. 조경 계획 및 관리	1. 도시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		
	2. 조경 사업	1. 조경시범지구 조성 및 연구 2. 가로 환경미화 사업의 계 획 및 통제 3. 녹지대신설 4. " 유지관리 5. 가로수 신보식 6. " 유지관리 7. 화초류 생산 및 수급관리 8. 분수대 신설 9. " 유지관리 10. 동상 및 기념물 유지관리					○ ○ ○ ○ ○ ○ ○ ○ ○ ○		
녹 지 보호계	1. 사방 조립	1. 양묘사업운영 관리지도 2. 사방 및 조립사업 시행 3. 종자채취 및 종묘알선 4. 종묘수급 5. 산림사업용 비료 수급 6. 임업기술 개발지도 및 보 급 7. 사방조립 시공지 관리				○ ○ ○ ○ ○ ○ ○			
	2. 산림 보호	1.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단 속				○			

계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임야훼손 방지를 위한 여 낭단속 3. 산림해충방지 및 산화경방 4. 시지정보호수 지정관리 5. 부정임산물 유통 및 무허 가 제재소 제방단속 6. 야생조수 보호증식 및 수 령기도 7. 산림범법자 단속처리지도 8. 경미한 산림보호 자				○			
공 원 관 리 계	1. 공원 관리	1.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시설 설치허가의 승인 2. 공원정용 허가 3. 공원시설물의 기증 승인 4. 기부재산의 기부 매입승인 협의 5. 공원입장료 감면 6. 공원운차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지도 감독							
	2. 공원 개발	1. 공원개발 종합계획 2. 시설공원 확충보관 3. 문화사행에 따른 휴식시설							

12. 상·하수국								
계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계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가. 업 무 과								
업무계	1. 서무	1. 국산하사업소 복무조사 2. 국소속 공무원 및 고용원의 진보제정			○			
	2. 기본 계획	1. 상하수도사업 기본계획 2. 사업효과 및 기업경영관리의 심사분석				○	○	
예산계	1. 예산	1.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2. 상수도사업비 예산배정 3. 소관사업 원가계산 4. 확정채무 지출질의 5. 예산여입				○ ○ ○ ○		
과징계	1. 급수 사용료	1. 급수사용료 및 기타세외수입 의 조정과 통제 2. 상수도세입 조정설의 3. 급수사용료 부과장수의 지도 감독 4. 수도사업비 세입현계			○	○ ○ ○		
	2. 부정 급수단 속	1. 부정급수(도수) 및 부정공 사 단속계획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형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은익세원발굴 3. 수도기원조사				○ ○			
경리계	1. 계약	1. 예가결정 전각서제출요구 계약체결 및 계약기한 연기 가. 3,000 만원 이상의 공사 나. 3,000 만원 미만의 공사 다. 1,000 만원 이상의 용역 및 제조가공 라. 1,000 만원 미만의 용역 및 제조가공 마. 500 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바. 500 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 ○ ○ ○ ○ ○			
	2. 지출 발의	1. 준공계처리 2. 하자보증금 관리 3.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 4. 실적증명원				○ ○ ○ ○			
	3. 지출 원인행위	1. 원인행위별 집계 2. 검사 및 검수입회(물품검사)				○ ○			
	4. 공금 지출	1. 출금전표 발행 2. 금권발행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5. 현재 표및기 타	1. 새출현재표 (집계) 2. 결산보고 3. 시산표작성 4. 월별자금집행계획 5. 자금교부 및 지출 6. 원천세 및 기여금지출 7. 공사 기성고 증명 8. 공사 준공증명 9. 공인 회계사 지정				○		○
	6. 관리 유지	1. 재고품 조사 2. 저장품 재평가			○		○	
	7. 차관 구매에 의한물 품출입 고	1. 계약요청 (소송, 구매) 2. 통관수속 3. 입항물품 검수			○	○		
	8. 결산	1. 자산실사 (고정, 유동자산) 2. 고정자산 유지관리 (취득, 제 각 보관)				○	○	
	9. 임대 청사관 리	1. 임대제입 차료				○		
	10. 재산 관리	1. 수원시설 후보지 확정 2. 시가감정의뢰			○			○

제 목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3. 분할측량 4. 매매계약체결 가. 500만원 이상 나. 500만원 미만 5. 소유권 이전 6. 기부채납소유권 이전 가. 500만원 이상 나. 500만원 미만 7. 잡종 재산임대 및 매각 8. 물품출납(각종 자재출입고 지시 대차전표 정산) 9. 차입재산의 갱신계약			○			
	11. 불용 물품결 정	1. 물품매입 당시가격(1천당) 가. 100만원 이상 나. 100만원 미만				○		
나. 급 수 과								
배수계	1. 물품 구매	1. 관급자재 구매의뢰 2. 상수도용품 구매요구			○			
	2. 급수 공사	1. 제수변 설치승인 2. 급수조절 3. 급수차 및 용구할당 4. 분기승인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누 수 방지제	1. 배수 관개량	1. 배급수관 개량사업계획 변경 승인 2. 개량공사용 자재구매요구				○			
	2. 송배 수관유 지관리	1. 송배수관 누수방지 업무지도 감독 2. 송배수관 정비보수 3. 누수방지 자체활동				○	○		
급수장 치제	1. 공사	1. 사설가압장 기부채납 2. 사설 가압장시설 승인 3. 부정급수 공사조치				○	○		
나 수원기전과									
전기제	1. 전기 관리	1. 상수도용 전기의 수급에 관 한 사항 2. 상수도사업용 전기설비의 시 설확장계획 및 개량연구 3. 상수도사업용 전화 및 광열 의 유지관리				○	○		
	2. 안전 교육	1. 전기분야종사원 교육				○			
	3. 지도 감독	1. 전기시설의 점검 및 유지 관리 감독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기계계	1. 기계 관리	1. 상수도용 기계설비시설의 확 장계획 및 개량연구				○			
	2. 차량 관리	1. 상수도 사업용 차량 유지관리 2. 차량배정			○		○		
	3. 안전 교육	1. 기계분야 종사원 교육			○				
	4. 지도 감독	1. 기계설비의 점검 및 유지 관리 감독			○				
수질계	1. 수원 지유지 관리	1. 수원지 유지관리 및 운영 지도 (기전설비제외) 2. 각 수원지별 운영현황, 모 고수취 3. 정수분야 종사원의 교육			○				공공 수자원 관리
	2. 상수 조절	1. 상수생산계획 2. 각 수원지의 상수정질량조절							공공 수자원 관리
	3. 수질 관리	1. 각종 수질시험 의뢰 2. 수원지별 정수용약품 수급 및 배정 3. 정수용 약품검사 4. 각 수원지 수질관리 5. 약품 구매 의뢰			○				공공 수자원 관리
	4. 허가 및인가	1. 공업용수시설인가 및 승인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결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시설계	1. 시설 계획	1. 상수도확장 기본계획 2. 상수도신설공사 종합계획 3. 수권지시설개량 공사계획 4. 영조물신개축, 보수공사계획 5. 상수도시설 사업인가 요청						○ ○	
	2. 외자 차관사 업	1. 외자구매의뢰 및 기술검토 2. 외자기술 용역비 지출발의 3. 선적보고 4. 지불약정서 연장요청 5. 본선 사고물품 처리 6. 외자 제작도면 승인			○ ○ ○	○ ○ ○			
라. 하 수 과									
하 수 행정계	1. 차관 업무	1. 차관 상환 업무 2. 외자도입에 관한 사항 3. 통관 서류 작성			○	○			
	2. 과징 업무	1. 하수도사용료 조정징수계획 2. 재심 신청 처리				○ ○			
하수시 설 1 계	1. 계획 수립	1. 하수도 시설의 종합계획						○	
	2. 승인	1. 비관리청 사업승인 2. 배수시설 설치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하수시 설 2 계	1. 하수 처리계 획 수립	1. 하수처리사업 기본계획						○	
마. 치 수 과									
용지계	1. 용지 관리	1.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본방침 2. 하천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등 허가진달 3. 하천 공작물설치 공유수면 매립권리 의무 양수도 허가 진달 4. 하천 공작물설치 공유수면 매립목적(설계계획) 변경, 공사, 착·공종기산 연기등 허가 5. 하천 공유수면용도 폐지등 인 6. 하천 공유수면 교환 양여 7.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및 공람공고 8. 폐천부지 양수 9. 유수인용 허가신청 진달 (적할하천)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골재 채취	1. 골재 채취 기본방침 결정 2. 골재 채취 예정지 협의						○	
	3. 용지 보상	1. 토지시가 감정 2.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				
치수계	1. 계획 수립	1. 하천공사 계획						○	
	2. 합의	1. 공사시행에 따른 지장물 이전수속(전선전화전기주) 2. 하천공사구간내 지장물 철거 요청 3. 하천지역 정비공사 시행관 계부서 협의			○				
	3. 공사 시행	1. 공사시행지시(방침결정분) 2. 기성공사부분 인정 및 입 회요구			○	○			회계 과장
수방계	1. 뽕수 해대책	1. 뽕수해대책 2. 연말뽕수해 피해상량보고				○		○	
	2. 유수 지건설계획	1. 유수지 배수펌프장시설 계획 2. 내수침수 예방 종합대책						○ ○	
	3. 유수 지유지 관리	1. 유수지 유지관리 지도				○			

13. 교통국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력
			담당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장	
가. 각과공통								
	1. 운송사업인 허가	1.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내인가) 및 증차 2.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본인가) 3.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일부 및 전부 면허취소 4.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및 폐지 5. 운임 및 요금인가						
	2. 운송사업체 지도감독	1. 운송사업체, 지도감독 2. 운송사업체 경영실태조사 3. 운송사업체 행정지시 4. 자가용 자동차 규장운송허가 및 지도감독 5.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 합병인가 6.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상호 대표자, 운행개시 등) 7. 기타신고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3. 운송 부대시 설인가	1. 주차장 및 차고인가 2. 정류소 신설 3. 기타 운송부대시설 (후생복지시설등) 4. 부대시설 지도감독 5. 공안협의				○ ○ ○			
	4. 조합 새마을 교통회 관및지 도감독	1.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명령 2. 조합의 정관, 예산의 승인 과 임원의 승인 및 취소 3. 조합업무의 지도감독 4. 각종 행정지시 행정처분 및 해제				○ ○ ○	○		
	5. 교통 질서화 립	1. 교통질서확립계획수립 (차량자체단속계획) 2.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 3. 교통불편 신고 엽서신고사 항 처리 4. 교통종합신고센타 신고사항 접수 5. 자체접수교통민원처리				○ ○ ○ ○ ○			
	6. 고속	1. 기본방침 수립, 사업면허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원조처
			담당자	제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및시의 버스터 미날, 화물자 동차정 류장	및 취소 2. 사업휴지 및 폐지허가 3. 사업양도 양수인가 4. 이용규정 및 사용약관 인 가 5. 사용요금인가 6. 구조 및 설비변경인가 7. 공사검사 8. 사업개선당령 9. 기타 각종 신고				○ ○ ○ ○ ○ ○ ○ ○ ○		
나. 교통기획과								
교 통 기획계	1. 교통 기획	1.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 2. 사업용 차량공급 기준책정						○
	2. 교통 량조사	1. 교통량조사 기본방침 2. 교통량조사 시행방침				○ ○		
	3. 수송 인원	1. 세부집행계획 2. 실시계획 승인 3. 수송동원 사정 4. 동원지원조사				○ ○ ○ ○		
	4. 교통 행정의 종합조정	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2. 조합예산 편성지침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교 통 시설계	1. 고속 및시의 버스터 미널	1. 일반지도 감독 2. 영업소에 관한 사항			○		○		
	2. 가로 표지판	1. 가로표지판 설치계획 2. 가로표지판 문안 심의			○		○		
주 차 시설계	1. 주차 시설계 획	1. 주차시설계획 수립 ○ 주차시설의 확충, 조정 ○ 주차요금의 조정 2. 공영주차장(노외, 노상) 설 치 및 폐지						○	
	2. 주차 장지도 감독및 관리	1. 주차장(노외, 노상, 간이) 지도감독 2. 노상주차장 수입금 관리 3. 주차카드 수불			○				
다. 운수 1 과									
운 수 1 계	1. 운송 사업지 도감독	1. 시내버스 승차표 수급관리 의 지도감독 2. 시내버스 승차표 매표소 관리의 지도감독 3. 위탁수수료인가 및 변경			○				
	2. 사업	1.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및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계획변 경 (인 · 허가)	대지 2. 시내버스 노선조정 (연장, 단 축, 변경) 3. 시외버스 노선조정 (협의, 단축, 연장변경) 4. 노선별 운행대수 조정 5. 임시 노선조정 (연장, 단축 변경) 6. 시제의 운행시내버스 노선 조정 (협의, 단축, 연장, 변경)				○			
운 수 2 제	1. 수송 계획	1. 택시부제운행 기본계획 2. 택시부제운행 실시변경				-			
	2. 공항 택시운 영	1. 공항택시 운행계획 2. 공항택시 신규등록 및 등 록말소 3. 공항택시 점검 및 지도단 속				-			
	3. 승차 대관리 (시내 버스및 택시)	1. 승차대 운영계획 2. 승차대설치 및 위치변경 3. 보수세척등 관리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시 장	시 장	
	3. 운행 질서위 반차량 행정처 분	1.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위반단속 적발시 보유차량 감치처분 2.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위반단속 적발시 보유차량 운행정지 처분 3. 운수사업자 경고처분 4. 사업용 자동차 도도운송 보안규칙 위반시 당해 차량 정비 명령 5. 자가용차량 공동사용시 차 량운행 정지처분 6. 자가용 영업행위시 차량운 행 정지처분 7. 자동차 매연 및 일산화탄 소 기준초과 발생 차량단속 적발정비 명령 및 운행정지 처분 8. 자동차 매연 및 일산화탄 소 기준초과 발생차량 단속 적발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 처분 및 고발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4. 교통 안전	1.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2. 교통안전정책 심의회의 자료제출 · 지정행정기관에 대한 제 획 수립자료 및 건의사 항 제출 실시협조 및 권고 3. 교통안전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립 4. 차량등 사용자에게 대한 지 도감독 5. 교통안전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 ○ ○		
	5. 사업 용차량 일제점 검	1. 사업용 자동차의 일제점검 계획 수립 2. 시내버스 택시의 일제점검 실시 3. 기타 차량의 일제점검 실 시				○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박 장	국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6. 비사업차량 검인등록	1. 비사업용 자동차등록검인 제척 수립 2. 일제등록검인 실시				○			
화물계	1. 계획 수립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수 송계획 수립 및 시행 2. 화물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2. 화물 자동차 정류장	1. 공사시행인가 2. 각종 인가 3. 위치변경인가 4. 공용개시 신고 5. 명칭 변경신고				○ ○ ○ ○ ○			
	3. 노후 도검사	1. 노후도 검사신청 2. 노후차량 차량검사기간 연 장 승인				○ ○			
정비계	1. 차량 정비	1. 보안기준 및 구조기준 2. 불법구조변경차량 검사지시 3. 자동차 정비계획수립 및 조정 4. 정비에 관한 기술상의 지				○ ○ ○ ○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파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도 감독 5. 정비관리자 교육 6. 정비 및 검사기기의 정도 유지관리 및 검사지시			○				
	2. 정비 사업체 인·허 가	1. 정비사업체 인·허가 (일반업체) 2. 정비사업체 (자기정비업체) 3. 정비사업체 승급허가 4. 정비사업체 휴지 및 폐지				○	○	○	
	3. 사업 계획의 변경	1. 업체양도 양수 합병인가 2. 상호, 대표자, 주사무소변경 신고 3. 사업개시 신고 4. 정비사업체 위치변경 허가 5. 정비사업체 시설변경 허가			○	○	○	○	
	4. 정비 사업진 흥회지 도감독	1. 정비사업 진흥회 지도감독				○			
	5. 증명 서발급	1. 자동차 정비사업 시설증명 2. 각종 시설증명		○					
	6. 검사장	1. 자동차 검사에 관한 기본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절 제 권 자						행조처
			담당자	제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지도감독	- 방침과 계획수립 2. 검사장 변경허가 3. 기타 검사장 지도감독 4. 교통안전진흥공단검사장 처분							
	7. 정비 공업협 동조합 지도감독	1. 정비공업 협동조합 지도 감독							
	8. 폐차 장에 관 한사항	1. 폐차장 지정 2. 폐차장 지도 감독							
만. 관광과									
관 광 진흥제	1. 관 광 선 전	1. 관광선전문 제작 2. 관광선전문 배포 3.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및 관광객 유치							
	2. 여 행 알 선 업	1. 국제여행알선업 허가전달 2. 국내여행알선업 사업허가 3. 국내여행 알선업요금 및 약관의 신고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시행인가 신청 3. 삭도 (또는 궤도) 준공검사 4. 삭도 (") 문임, 요 금인가 5. 궤도사업 차량운전속도, 운 전회수, 영업시간과 발착시간 인가 6. 삭도 (또는 궤도) 사업정차 장 신설 또는 변경인가 7. 삭도 (또는 궤도) 사업개시 신고 8. 삭도 (또는 궤도) 사업양도, 양수 인가신청 9. 삭도 (궤도) 사업 합병인가 신청 10. 삭도 (궤도) 사업의 후지 (폐지) 인가 신청 11. 삭도 (궤도) 사업관리 위탁, 수탁 인가신청 12. 삭도 (궤도) 사업법인 해산 인가신청				○		
						○		
					○			
					○			
					○			
					○			
					○			
					○			
					○			
					○			
					○			

제 목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파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4. 관광 호텔관 리	1. 관광용 기자채수입 추천 2. 면세용도 물품증명 및 반 입증명 3. 관광진흥자금융자추천진달 4. 관광사업 사전협의 5. 약관 신고수리			○ ○				
	5. 관광 사업요 금신고	1. 관광호텔요금신고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요금 신고				○ ○			
관 광 지도제	1. 관광 사업제 지도감 독	1. 관광사업체 감독 2. 관광사업체 등록취소 3. 관광사업체 사업정지 4. 관광사업체에 대한 보고 및 자료수집 5. 관광종사원 고용해임 신고			○ ○ ○			○	
	2. 관광 종사원 자격시 험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시행 요구				○			
	3. 연수 기관지 정	1. 연수기관의 지정신청 2. 연수기관의 변경신고 3. 연수기관 지도감독				○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절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4. 관광 종사원 교육	1. 관광종사원 교육			○				
	5. 삭도 ·케도 사업체 지도감 독	1. 삭도·케도 사업체 지도 감독				○			
바. 지하철 철도과									
지하철 기획계	1. 지하 철건설 및운영 의종합 계획	1. 지하철 노선계획 조정 2. 지하철 투자계획 및 조감 3. 연결통로 설치승인						○ ○	
	2. 지하 철사업 의종합 조정	1. 운행중인 지하철운영 계획 2. 지하철관련 기관의 업무조정					○ ○		
	3. 지하 철홍보	1. 지하철 홍보계획의 종합조 성 업무				○			

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합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파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지하철 지도제	1. 지하 철공사 지도감 독	1. 지하철 공사의 정관 변경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2. 지하철공사 직제 규정 및 보수제정 승인 3. 지하철공사 중요한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승인 4. 지하철공사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업무승인 5. 지하철공사 차입금 상환 6. 지하철 건설용의 자체도입 에 따른 관세경감 확인 7. 지하철 용지 보상업무 지도							○	
공 정 관리제	1. 지하 철공사 의진도 파악및 조정	1. 유관기관에 대한 공정보고 2. 지하철 공사에 대한 진도				○	○			
	2. 지하 철건설 물동제 획및지	1. 지하철 건설용 강제외 수 권조정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도분석 과파악								
	3. 도시 계획결 차	1. 도시계획사업(지하철도)시 행 허가 2. 기타 도시계획절차신청					○		
	4. 기타	1. 지하철 시공회사의 기술경 가 최종보고 2. 지하철 시공회사의 기술경 가와 관련된 업무				○		○	

14. 민방위국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재 장	과 장	국 장	부시 장 시 장	
가. 민방위과								
관리제	1. 협의 회 개최	1. 민방위 협의회 개최 2. 민방위 협의회 간 사회의 개최						○
	2. 민방위 업무조정	1.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조정			○			
계획제	1. 민방 위 계획	1. 민방위 업무추진지침 2. 민방위 세부시행 계획 3. 구체화의 승인 4. 기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민방위 업무총괄	1. 계획의 수립 2. 종합평가				○	○	
	3. 민방 위 업무 지도감독	1. 지도감독 계획의 보고 2. 동향종합보고				○	○	
	4. 민방위 업무종합	1. 종합평가 분석				○		
	5. 민방위 업무연구 발전	1. 연구조사 2. 자료수집 분석 평가				○	○	
	1. 민방위 시설계획	1. 민방위시설에 관한 계획 2. 시설 추진상황 확인지도 3. 민방위장비물자 수급계획 4. 구사업 계획 승인					○	○
시설제	2. 민방위 준비명령	1. 준비명령 및 집행 2. 이행상태 점검확인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3. 자료수집			○				
	3. 민방위 보상	1. 민방위 사태로 인한 응급조치 및 보상 2. 응급조치 추진상황확인 3. 장애시설물 제거 확인					○		
나. 운 영 과									
편 성 운영 계	1. 민방위대편성	1. 민방위대 조직편성에 관한 방침결정 2. 민방위대 편제 조정 3. 민방위대 개편 결과					○		
	2. 민방위대자원	1. 자원관리 2. 자원관리 정기 보고 3. 자원관리 지도감독				○			
	3. 민방위대의동원및운영	1. 민방위대 동원결정 2. 민방위대의 동원결과 3. 민방위대 신고장 운영관리 4. 민방위대 육성발전 5.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응급조치 결정 및 손실보상 6. 민방위대원 상이자 치료병원 지정							
	4. 인력동원	1. 인력동원 세부집행 계획 2. 인력동원 실적추진							
	교육계 1. 민방위교육	1.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년도)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 민방위 교관 관리 3. 교재의 제작발간 4. 특별교육 계획 5. 교육 결과 분석 6. 교육결과 보고			○	○ ○ ○ ○			
	2. 홍보 및 계몽	1. 민방위홍보 및 계몽				○			
훈련제	1. 민방위 의날훈련	1. 민방위의날 훈련계획 (년도) 2. 월별 실시계획 3. 군관민 합동훈련 및 등화 관계 훈련계획 4. 훈련결과 분석 5. 훈련결과 보고 6. 훈련 우수대 및 유공자표창 7. 방재권 훈련계획			○	○ ○ ○ ○ ○	○ ○		
	2. 화생방	1. 화생방방호 및 통제계획 2. 화생방장비 및 물자			○	○			
	3. 민방위 대원통제	1. 민방위와 관련된 주민통제				○			
다. 비상계획과									
동원제	1. 동원 계 획	1. 분야별 동원세부집행 계획 의 조정통제 2. 각종동원소요 및 능력판단 조정통제				○ ○			해 당 부 서

구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현조리
			담당자	재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3. 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4. 비축계획의 조정통제					○		
	2. 한강안전관리대	1. 한강 안전관리대 운영지도			○				
비상 계획제	1. 충무계획	1. 충무계획 지침작성 2. 전시행동계획 3. 분야별 충무계획 조정통제 4. 충무계획자료수집 및 재원획득 5. 비상대비 업무교육						○ ○	비상 부서
	2. 군사시설	1.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2. 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에 관한 대군협조 3. 보호구역 지측여부 검토 4. 보호구역내 무허가 건물철거				○ ○			
	3. 주요시설경비	1. 주요시설 경비지도							
	4. 군관계지원	1. 군관계지원 2. 대군 협조사한							
	5. 방위협의회운영	1. 방위협의회 개최 2. 방위협의회 간사회의 개최							
	1. 비상대비훈련통제및교육실시	1. 훈련통제계획 2. 훈련통제 및 조정 3. 훈련실시결과 및 측정							

15. 소방본부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별조치
			담당자	계장	과장	본부장	부시장	
가. 각과공통								
각실과 공 통	1. 계획	1. 소방업무에 관한 중요계획 및 방침 2. 중요행사 계획 3. 소관업무 세부계획 수립 4. 소관사무 심사분석						○
	2. 복무	1. 직원 근태 가. 지방소방령이상 나. 지방소방령 이하 2. 시간외 근무명령 가. 지방소방감 나. 지방소방령 다. 지방소방령이하 3. 출장명령 및 복명 가. 관외 (1) 지방소방감이상 (2) 지방소방령이하 (3) 시간부 나. 관내 (1) 지방소방정이상 (2) 지방소방령이하 4. 과내 소속직원의 복무규율에 관한사항 5. 과내소속직원의 표창추천						○

과목	구분	내역	결재필요					비고
			담당자	과장	부장	주임	시정	
		B. 자료의 분류 사무지정		○				
		C. 자료의 분류						
		1. 소관과 자료사무처의부 심결			○			
		2.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3. 소관업무의 결재한 민원조사			○			
		4. 자료업무의 결재통지			○			
		D. 자료의 분류						
		1.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2.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3.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4.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5.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6.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7.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8.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9.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0.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1.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2.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3.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4.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5.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6.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7.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8.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19.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20. 자료업무처의결과 통보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자	제 장	과 장	본부장	부시장	시장	
나. 소방행정과									
소 방 행정계	1. 인사	1. 인사관리 지침 2. 임용 가. 지방소방령이상의 승진임용 나. 지방소방령이하의 승진임용 다. 지방소방장이하의 신규임용 승진시험 라. 시보 소방관 정규임용 마. 고용원 및 기능직, 전문 직의 임용 및 상벌 비. 회계관계공무원의 임용 3. 과·서간 서내전보 가. 지방소방정이상 다. 지방소방령 이하 다. 기능직, 전문직고용원 4. 정기 승급발령 (소방공무원, 기능직 고용원) 5. 휴직, 복직, 직위해제, 직위 부여, 편직 및 수석 가. 지방소방정이상 나. 지방소방령이하 6.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조정 및 승진임용자와 명부확정 7. 승진심사대상자 명부작성				○		○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계 장	과 장	본부 장	부 시 장	시 장	
		8. 인사발령 통지 9. 단기 이동승인 10. 소방관 승진시험 요구 11. 소환사(지방소방사) 공채시 험 요구 12. 인사기록부 유지관리 13. 징계 집행 가. 지방소방정 이상 나. 지방소방령 다. 지방소방경 이하 4. 공로·퇴직에 관한 사항 가. 제정회 나. 시행			○				
	2. 일반 사 무	1. 직원 순직, 사망, 공상자 발 생 보고 2. 공적 심사위원회 운영 3. 공무원 증발급 및 훈장대여 회수 4. 관인 관수 및 문서통제 5. 보존기간경과 문서처리 6. 사법 경찰관리지명서 신청 7. 관보 시보 회보처리 8. 반상회 관계처리 9. 예식 및 의전행 사회의에 관				○			

873

제 번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영조처
			담당자	재 장	과 장	본부장	부시 장	시 장	
		5. 건강카드 유지관리 6. 의소대원 등 재해보상 지급 결정		○			○		
	6. 교육	1. 교육계획 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요자 조사 4. 직장훈련 가. 기본계획 나. 월간계획 다. 평가관리 라. 교재발간 5. 교육성과분석 및 지도감독					○		
	7. 상훈	1. 표창추천					○		
	8. 문서	1. 문서체송 2. 우표수불		○ ○					
	9. 민원 봉 사	1. 봉사실 운영			○				
소 방 기획처	1. 기획	1. 행정제도의 연구 2. 기본운영계획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나. 중요 운영계획 다. 운영계획 수정 라. 심사분석 3. 소방력 기준책정					○ ○ ○ ○ ○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계 장	과 장	본 부 장	부 시 장	시 장	
		4. 관할구역 조정 5. 조례, 규칙, 예규, 훈령 등의 제정 개·폐 심사요구 6. 도서 및 법령집 편리 7.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8. 본부 각과 및 소방서간 정 원조정 9. 월동소방대책 가. 계획수립 나. 추진실적보고		○		○ ○ ○ ○			
감찰계	1. 감사 제 회	1. 감찰업무처리 지침				○			
	2. 징계 운 영	1. 징계운영 가. 징계요구 (1) 지방소방정 이상 (2) 지방소방령 이하 나. 징계업무지도 감독				○ ○		○	
	3. 감사	1. 소방행정 감사 2. 비위관련민원 진정 및 협보 조사처리 3. 감찰사항 조사보고 4.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 5. 선행자 추천 및 경고대상 자 처리				○ ○ ○ ○			

세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합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 당 자	재 장	과 장	본 부 장	부 시 장	시 장	
		가. 산행자 추천 나. 간부의 장려장 및 경고장 다. 비간부 장려장 및 경고장			○		○		
	4. 소청	1. 소청사건			○				
경리계	1. 청사 관 리	1. 소방관서 시설의 관리유지				○			
	2. 물품 관 리	1.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가. 소방관 피복 나. 급·대여품 출납 다. 비품출납 및 관리전환 라. 소모품 출납 2. 불용품 처분결정				○ ○ ○ ○ ○			
	3. 경리	1. 세출예산편성 및 배정요구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출계산서 및 결산서 작성보고 4. 과오납정리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6. 입찰등록 사항				○ ○ ○ ○ ○			
	다. 방호과								
방호계	1. 계획	1.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2. 의용소방대 운영 3. 의용소방대 장등 입면 4. 민방위 및 전시운영계획				○ ○ ○ ○			

제 목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형 조 처
			담 당 자	제 장	과 장	본 부 장	부 시 장	
	2. 화재	1. 화재현장조사 및 처리 가. 중요화재 나. 경미한 화재 2. 화재방어 검토회의 3. 화재 통제분석 4. 화재증명에 관한 사항				○		
	3. 소방수리	1. 소방수리 유지관리			○			
	4. 훈련 및 교양	1.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			
장비제	1. 차량수급 및 관리	1. 소방차량 정수배정 2. 소방차량 불용결정 3. 소방차량 수급계획 4. 소방차량 관리 개선 5. 차량수리 6. 차량 정기점검 검사 7. 소방차량의 차종 및 차량 변경승인 8. 소방차량의 교체 및 교환 승인 9. 일상점검 정비 10. 1일 차량 운행 11. 소방관서 차량배정 12. 차량등록				○	○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업조처
			지 당 자	계 장	과 장	본 부 장	부 시 장	시 장	
	2. 구매 출납	1. 유류 및 차량부품 구매요구 2. 유류 및 차량부품 출납		○	○				
	3. 기술 지도	1. 운전원 교육계획				○			
	4. 자동차 보험	1. 보험업무 가. 가입 및 계약 나. 보험신청 및 처리			○	○			
	5. 소방 항공	1. 항공기, 운항승인 (화재출동, 일반지원) 2. 항공기 점검정비 및 검사 3. 일일운항 계획보고 4. 헬기 기술훈련 5. 유류 및 항공기부품 구매 요구 및 출납			○ ○ ○ ○ ○	○ ○ ○ ○ ○			
	지령실	1. 운용 및 관리			○ ○ ○ ○ ○ ○	○ ○ ○ ○ ○ ○			
라. 지도과									
예방제	1. 화재 예방	1. 화재예방지침 및 계획수립 2. 화재 경계지구 지정				○ ○			
	2. 지도감독	1.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			

계열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협조처
			담당 자	재 장	과 장	본부 장	부 시 장	시 장	
		업무지도 2.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업 신 교업소 지도 3. 소방설비업등록 및 방열처 리자 지정신고 업무지도 4. 건축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업무			()				
	3. 교양	1. 위험물 취급주임 교양			()				
	4. 허가 업 무	1.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 허가 2.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소 행 정처분			()				
지도계	1. 소 방 검사지도	1. 소방검사 방침제정 수립 2. 소방시설 추진지도			()				
	2. 소 방 훈련지도	1. 소방훈련 방침제정 수립 2. 훈련지도 업무			()				
	3. 방화관 리자지도	1. 방화관리자 강습 및 실무 양업무감독 2.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			()				
	4. 소방 사 범	1. 소방사범처리 업무지도			()				
홍보계	1. 홍보	1. 소방홍보 계획수립 2. 불조심 계몽지도 3. 소방홍보용 사진촬영 및 인화	()						